

우리나라는 1950년대 시대적 전환기를 맞이 하여 빈민 부랑인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급격하게 이들의 약탈행위, 반사회적 행위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자 사회복지 대상으로 대두되었다. 1970년대 사회문제로 제기되었는데, 당시에는 '노숙자 보호소'에서 숙식제공만 하였다. 정부는 1975년 내무부 훈령 410호는 부랑인 보호대책을 사회복지적 측면보다 사회질서 유지의 사회봉쇄적 성격을 띠고 실시했다.

1980년대 들어 부랑인보호제도를 도입할 사회적 필요성을 느낀 정부는 1981년 부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부랑인 보호대책을 수립하였다. 1981년 10월 만들어진 정부의 '부랑인 보호정책'은 부랑인 복지사업이 공안의 개념에서 복지의 개념으로 정책전환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보호대책의 기본방향은 ① 부랑인 복지사업을 민간에 의한 자선적 시혜로부터 정부에 의한 복지정책적 시혜로 전환 ② 수용보호시설을 확충하여 시설부족 상태를 완전 해소하고 정신질환자등 장애종류별로 전문시설에 수용하며, 자활촉진사업을 적극 실시하여 사회복지기를 유도 ③ 부랑인시설의 운영을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효율 도모 ④ 단속 및 예방을 위한 행정체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정부의 부랑인보호 사업방향은 진정한 의미의 사회복지측면으로 실천되기 보다 단지 사회통제를 위한 수용보호대책으로 실천되었다. 이런 양상들은 1987년 부산 형제복지원과 충남의 성지원에서 원생을 구타, 살해한 사건 등 부랑인 수용시설의 문제점들이 노출됨으로 드러났다.

부랑인시설에 수용된 이들의 인권문제는 당시 민주화와 인권운동과 관련되어 사회문제화되었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대책을 재검토하게 된다. 1987년 보건사회부 훈령 제523호에 제도적으로 부랑인복지사업에 전문사회사업가들이 개입하도록 발령한 것이 그것이다.

그 내용으로는 부랑인의 단속과 입·퇴소 절차를 개선하는 것, 시설수용인원의 규모를 적정화하는 것(300-500명선), 장애종류별로 전문시설에 분리·수용하는 것, 시설내의 직업보도교육을 강화하고 전문상담실을 설치하여 사회복지전문가등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것, 시설운영을 공익법인화하고 정지적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것등이 주된 내용이다.

다음은 '한국부랑인(아) 복지시설연합회'가 94년 1월 현재 발표한 통계이다.

<표 1> 지역별 분표현황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설 수	41	4	4	1	1	1	2	3	4	4	1	4	5	1	5	1
수용 인원	13480	3676	1764	1588	430	520	355	1106	271	1099	320	487	974	317	559	50

현재 전국 부랑인 복지시설은 41개소이며 이곳에서 생활하는 부랑인은 13,480명이다. 교통의 중심지역에 부랑인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수용인원

구분	인원	계	50명이하	51-100명	101-300명	301-500명	501-1000명	1000명초과
계		41	2	12	14	4	6	3
x		100	4.9	29.3	34.1	9.8	14.6x	7.3
부랑인		32	2	8	12	3	4	3
부랑아		9	-	4	2	1	2	-

대부분의 부랑인복지시설이 많은 인원을 보호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1개 시설당 약 3백30명을 수용보호하고 있으며 5백명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도 약 22%나 되었다.

<표 3> 연도별 수용인원의 변화

구분		년도	1981	1983	1986	1991	1994
시설수(개)	부랑인		23	27	27	29	32
	부랑아		11	10	9	9	9
	계		34	37	36	38	41
수용인원(명)	부랑인		5,175	8,555	13,150	10,381	11,057
	부랑아		3,430	3,434	2,975	2,835	2,423
	계		8,605	11,989	16,125	13,216	13,480

시설의 수용인원은 81-6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이다 부산 형제복지원과 대전 성지원 사건 이후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표 4> 시설수용자의 연령별 현황

성별연령	계	18세미만	19-30세	31-50세	51-60세	61세이상
계(100%)	3,849(100)	525(13.6)	474(12.3)	1,631(42.4)	732(19)	487(12.7)
남	2,580(67)	342	304	1,090	558	286
여	1,269(33)	183	170	541	174	201

18세 미만의 아동(13.6%)과 61세이상의 노인(12.7%)를 제외하고, 경제활동인구계층에 속하는 31-50세가 42.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특히 18세 미만의 부랑아가 13.6%나 되는 점에서 부랑아의 증가가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다음은 노순희씨의 논문에서 찾아본 설문조사 결과이다. 대상은 전국 5개 수용시설 117명이다.

부랑인들의 교육수준은 국졸 및 국졸이하가 31.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고졸이 30.8%로 대체로 학력이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또 입소전 직업을 보면 대부분이 단순노동이나 상업·농업 및 무직이 50.0%이다. 이는 부랑인이 조직화되고, 규범을 준수하는 사무직이나 관리직 및 직장생활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나타낸 것이라고 노순희씨는 보았다.

부랑인들의 출신지역을 보면, 농·어촌 및 광산촌이 33.3%, 중소도시가 26.6%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농·어촌의 이농인구가 부랑인이 되었거나 대도시 주변의 중소도시 빈민지역 출신들이 부랑인이 된 예가 많다. 입소전 생활형편은 그저 그런편이 41.9%, 어려웠다 22.2%, 매우 어려웠다 18.8%로 보통이하가 82.9%로 대부분 생활상의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부랑인의 발생원인을 실업과 빈곤 및 경제문제 등으로 파악한 것과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결혼에 있어서도 43.6%가 이혼, 이혼·사별·별거가 27.4%이라고 응답했는데, 이는 부랑인의 특성중 타인을 존중할 줄 모르며, 상호적인 의무의 짐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는 것의 반영이라는 시각이다.

다음은 '은혜의 집'에서 생활하는 부랑인 48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성별 남자 67%, 여자 33%이며, 연령분포는 20-49세가 전체의 76.1%, 평균연령은 41.3%이었다. 교육정도는 국교출신이 34.4%였으며 최근들어 대학출신자의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다. 이들 대부분 정신질환자나 알콜중독자, 성격장애 등으로 사회에 적응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혼상태는 미혼이 36.5%로 나타나 부랑인의 특성인 무책임성이 잘 나타나며 기혼자의 경우도 문란한 생활과 무절제한 가정유지로 대부분 가족체계가 붕괴된 것을 알 수 있다. 군복무관계는 면제가 52%로 절반이상을 차지하며 이는 저학력과 신체장애, 정신질환이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재원기간은 2년이상인 54.6%를 차지하고 있어 장기입소자가 많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입소전 정신과 치료는 20.6%가 입원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비율은 더 높다. 장애별 분류는 74.4%가 장애인으로 나타나고 있어 많은 수의 부랑인들이 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결혼상태는 결혼해 계속하는 경우가 33.2%, 대부분 연락이 두절되거나 연락이 되더라도 강력히 인수를 거부하는 등 가족체계의 붕괴양상을 보인다. 가족중 현재 보호자는 편부모 18.6%, 부모 17.5%로 36%정도 부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족으로부터 외면되는 것을 알 수 있다.

5. 문제점

정부의 복지정책예산 (95년 국감자료)

<표 5> 국가예산 및 GNP에 대한 사회복지 예산비율(91-95) (단위:십억원)

구분	91	92	93	94	95
국가예산(A)	31,283	33,362	38,050	43,250	49,988
GNP(B)	206,681	229,938	256,700	297,635	335,529
사회복지예산(C)	1,996	2,149	2,413	2,614	2,925
-국가예산대비 (C/A)	6.4%	6.4%	6.3%	6.0%	5.9%
-GNP 대비 (C/B)	0.97%	0.93%	0.94%	0.89%	0.87%

사회복지예산의 감소 속에서 부랑인을 위한 처우나 개선을 요구한다는 것은 부질없는 헛수고일 수 밖에 없다. 굳이 정부의 사회복지예산 추이를 살펴본 것은 그러한 의도이다. 우리정부가 국가예산의 6.4%를 쓴 91년에 국가예산의 영국은 33.1%, 일본은 32.9%를 사회복지예산으로 썼다. 미국은 92년 28.5%를 사회복지예산으로 썼다.

<표 6> 사회보장예산/국가예산(%)

자료: IMF, 1994

구분	89	90	91	92
미국	26.6	25.6	26.1	28.5
프랑스	44.9	44.0		
독일	48.5			
스웨덴	52.5	51.5	52.1	50.7
영국	34.5	30.3	33.1	
한국	8.3	9.0	9.5	9.8

<표 7> 사회보장예산/GDP(%)

자료: IMF, 1994

구 분	89	90	91	92
미 국	6.14	6.10	6.64	7.01
프랑스	18.90	18.74		
독 일	14.29			
스웨덴	19.39	19.51	19.78	19.51
영 국	11.75	11.43	12.88	
한 국	1.39	1.51	1.62	1.71

<표 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현황

(단위: 백만원)

시 설 명	94예산	95예산	비 고
계	58,616	66,557	국고에 한함
결 핵	48	67	
나장애인	295	306	
정신질환	6,460	7,575	
부 랑 인	3,097	3,567	
부 랑 아	1,466	1,549	
부녀직보	927	1,072	
모자보호	1,179	1,332	
아 동	16,637	18,789	
노 인	6,295	7,063	
장 애 인	22,212	25,237	

국가의 역할은 단속외에는 별달리 찾아볼 수 없는 속에서 종교단체들의 활동을 들 수 있다. 11월 중순 용산구청 맞은편 골목에 자리하고 있는 '베들레헴의 집'을 찾아갔다. 성프란체스코 수도회에서 운영하는 이 곳은 1978년 11월에 문을 열었다. 베들레헴 집 앞에는 10여명의 행려자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2백원짜리 아침과 점심을 제공하는 이 곳에는 매일 1백50여 명 행려자들이 찾아든다.

2년째 이곳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요셉수사(34)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왜 부랑인이 되는가?

=10인10색이다. 그중에 가정불화가 가장 많다고 볼 수 있다. 어려서 고아가 되었거나, 이혼을 하면서 재산권을 부인에게 빼앗겼거나 하는 등 사람마다 그 이유는 다르다. 그러나 한결같이 공통점은 무능력하다는 점이다. 대부분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들의 과거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대부분 과거에 대해 깊은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중에는 이상하게도 주방장이 많다. 또한 대학을 졸업하고 크게 사업을 하다가 망해 제기를 못한 경우도 보았다. 노가다나 날품팔이를 하는 사람도 많았다.

-부랑인들의 삶은 어떠한가

=봄, 가을에는 시장이나 지하철역에서 자기도 하고 한달에 15만원하는 데 거처를 두거나 벌집(서울역 주변에 많다)이라고 해서 하루밤 3천원인 곳에서 잠을 자기도 한다. 전혀 수입이 없는 것은 아닌데 봄, 가을 사이 남대문이나 청계천에서 품을 팔거나 용역회사에서 이삿짐을 나르는 식으로 일당을 벌기도 한다.

-그렇다면 돈을 모아 부랑인의 생활을 벗어날 수는 없는가

=부랑생활은 습성인 것 같다. 돈을 못모으는 습성이 있는 것도 같다. 그들 말에 의하면 '한순간 맥이 탁 풀릴 때'가 있는데 그때는 그나마 모은 돈을 갖고 사창가를 찾거나 술로 다 허비한다. 리어커로 고물을 수집해 파는 어느 사람을 아는데 아직도 밥을 얻어 먹으러 오는 모양에서 어쩔 수 없는 습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가의 책임은 없는가, 무인가 국가가 해결하고 나서야 하지 않는가

=국가는 도덕적 책임감외에는 없다고 본다.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가난한 이들에 대한 환상이 깨졌다. 도움을 주면 그것을 고맙게 하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할 것이라 생각했으나 이들은 그렇지 않다.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오히려 당연스레 생각한다. 자원봉사자에게도 "xx년아"하는 욕을 서슴없이 뱉곤 한다. 살아보려는 사람에게 우리사회는 어느 정도 보상능력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지 않다.

-다른 대안은 없는가

=우리 수도회에서 이런 봉사를 한지도 꽤 시간이 지났다. 최근 들어 무료식사를 제공하는 곳이 '유행처럼' 늘어가고 있다. 이 문제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인데 곧 대책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환원하는 전문적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잠을 재워주고 밥을 주는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연 이들이 참여할 지는 의문이지만 이젠 전문적 프로그램이 요청되고 있는 것을 느낀다.

-천주교에서는 이런 곳이 얼마나 되는가

=서울지역만 8곳이 있다. 대부분 한끼 식사를 제공하는데 신설동에 있는 작은 소망의 집에서는 세끼를 다 준다. 잠을 재워주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안다. 개신교에서도 하는 것이 있다고 들었다. 베들레헴의 집에서는 식사외에도 한 달에

한 번 이발을 해주고, 헌 옷가지들을 주고 있다.

-재정은 어떻게 마련하는가

=월 3백-4백만원이 든다. 십시일반으로 살아간다.

-어려움은

= '밑빠진 독에 물 붓는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수도회에서 운영하는 식사 제공처나 무료로 치료를 해주는 요셉의원, 성가복지병원 등이 있는데 오히려 이곳들이 부랑인의 생활을 고착시키는 것은 아닌가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외국에서는 부랑인문제를 주택의 문제로 본다 그랬는데 우리의 경우는 틀리다고 본다. 주택을 준다고 해도 이들의 이 습성은 고쳐지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꼬지'(구걸)의 삶을 쉽사리 버리지 못할 것이다.

삶의 방향을 잃고 있다는 이야기를 끝으로 베들레헴의 집을 나설 수 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부랑인들에게 '내일의 희망'을 어떻게 심어줄 것인가. 이에 앞서 왜 '희망이 아닌 절망'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절망 속에 천착해 들어갔는지 한 번 의문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삶의 목표 설정을 위한 방법으로 시설 속에서 해답을 찾을 것인가. 시설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들의 사회환원에 노력하고 있는지 공상길씨의 논문에서 살펴본다.

은혜의 집 사회사업적 재활프로그램 일부(은혜의 집 수용인원 485명)

1)상담사업

·임·퇴소 심사(매달 신입원생을 중심으로 심사):퇴소를 원하거나 사회복귀가 가능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 심사위원회를 열어 사회적 재활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

·연고자조회(분기별 및 수시조회):원생의 사회복귀를 돕고 지속적인 관찰 및 상담을 통해 연고자 확인에 힘써 재입소방지를 위해 사후지도등의 도움을 준다

·가출인접소

·부랑인실태조사

2)직업지도사업

·외부작업장 개발 및 고용촉진

·단순작업 개발-원생들이 할 수 있는 작업을 찾아 그들의 근로의욕을 부양시키고 작

업비 활용을 통한 원내생활의 활력을 제공한다.

·직업보도 대상자 파악 및 교육(타일, 목공 및 각종 단순작업, 상표붙이기, 인형조립, 쇼핑백작업, 기계조립, 세탁실, 피복실, 이용실)-일을 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갖추고도 무계획과 나태성으로 일관하는 원생들에 대해 경제적 자립을 통한 자립귀가의 가능성을 제시하여 자활을 유도하고 직업보도에 참여하고 있는 원생중 사회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 일정기간 사회화훈련을 통해 귀가를 유도한다.

3)각종 프로그램 사업

·장애별, 기능별 레크레이션

·사진촬영 및 전시

·운동요법

·음악요법

·작문요법

·교육요법(교양, 예절, 정신교육, 시청각 교육)-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어 인격적 성장을 도모

·종교활동

·10분 발표회-방어적 성격을 변화시키며 자신의 생애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갖도록 유도

·간부원생교육

·외출·외박실시-사회적 재활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와의 이질화를 예방

·자립귀가교육-상담, 직업보도를 통한 자립귀가자 선정 및 사회재활교육 실시로 재입소를 예방

·한글반

·작업능력평가

·작품전시회

실제 시설을 통한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회복은 설득력을 갖고 있었는데, 부랑인들은 결코 삶을 포기하거나 함부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결혼의 한 100%가 긍정적인 대답을 하였고, 미혼인 경우에도 94.1%가 긍정적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랑인들의 자활센터 내 작업만족도와 인간관계, 정신건강은 대체로 원만하다고 반응하였다(물론 이는 부랑인 시설 내에서의 입소자들이 생활하는데 다소 억압적이고 행동의 자유가 제한되기 때문에 오히려 행동의 적극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67.8% 이상이 모두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중 건강관리교육을 가장

원했고, 그 다음으로 도덕·예절교육과 직업훈련교육 및 인간관계교육을 원했다. 부랑인의 가장 큰 욕구는 외출의 자유와 빠른 귀가로 나타났다.

또한편으로 현대적 부랑인 복지의 새롭고 적절한 모델로 그룹홈의 필요성 제기되기도 한다. 백남영씨는 1994년 발표한 석사논문 '부랑인을 위한 교회의 그룹홈 설립과 운영에 관한 연구'에서 말했다. 그룹(Group Home, 집단가정)은 정신지체장애인들의 복지시설의 예로 현재 국내에서 실행되고 있다. 이 주장은 부랑인의 복지가 부랑인의 관점에서 시행된다면 이는 잃어버린 가정의 회복이란 대전제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시설의 필요성은 앞서 얘기되었듯이 그간 '인권의 사각지대'로 통칭되는 시설이 갖고 있는 문제점 해결이 선행되지 않고는 기대를 걸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이른바 원생들에게 폭행, 불법감금, 강제노역이 가해진 부산 형제복지원, 대전 양지원·성지원 사태를 계기로 터져나온 부랑인 수용소를 둘러싼 파문은 이 사회가 갖고 있는 온갖 모순을 집약적으로 드러내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지적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내무부 훈령 410호에 나타난 부랑인의 적용범위는 넓고 애매할 뿐 만 아니라 수용자에 대한 강제격리수용의 판정을 행정기관, 경찰 심지어 수용소경영주가 임의로 내릴 수 있게 되어 있다(이 부분은 부랑인시설협회에서 말하는 개선안과 마찰된다). 보사부의 사회복지적 차원보다는 내무부의 치안유지의 차원의 성격이 더 강한 것이다. 강제수용은 인신구속이나 영장이나 적법적인 집행은 이뤄지지 않는다. 무엇보다 큰 문제로 수용시설을 개인에게 위탁경영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12시간 이상의 강제노역과 인권유린의 현장은 지금은 사라졌는가.

<부랑인복지의 개선점>

1) 부랑인의 단속과 입소에 관련된 문제점

복지보다는 사회통제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어 실제사업 방향도 사회통제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부랑인의 수용과정에서도 연고자의 확인과 같은 개별적 상담조사 절차가 지극히 소홀한 형편이다. 또 부랑인 보호시설 입소시 도시미관을 위한 행정적 독단과 경찰의 개인당 근무평점을 채우기 위한 강제적 수용으로 헌법적 권리인 개인의 신체자유가 박탈당하는 경우가 많고 연령에 관계없이 무작위로 배치수용함으로써 집단교육이 부적절하며 여러 종류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 혼합적으로 수용되어 있다. 부랑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방법도 억압적 성격이 강한 편이다.

정부의 부랑인보호사업 세부지침에서는 "시설수용자에 대해 폭행, 자유억압 및 강제노역으로 인해 불편한 원내 분위기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한다는 규정을 두었지

만 실제 시설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군대식의 조직을 편성하여 강제적인 훈련을 시키고 노력동원을 하는 등 억압적 방법을 채택하고 있기도 하다.

2) 종사자와 보호시설의 부족에 대한 문제점

① 과밀 과다 수용 불가피

② 시설 수용인원에 비해 시설종사자직원 매우 부족

-종사자 1인당 수용인원 1986년 1인당 31명(종사자 534명) 1991년 당시 38개 시설에 국가가 배정한 인원은 698명이나 실제 826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직원1인당 담당인원이 16명이어서 일본의 1.4명에 비해 무려 11배이다. -전문적 서비스제공에 한계를 느낄 수 밖에 없다.

사회복귀가 성공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서비스의 질보다는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보사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은 사회 일반 근로자에 비해 근무자의 보수 1/2나 1/3에 불과하다. 뿐만아니라 기타 수당이 하나도 없으며 호봉제마저 없고 퇴직금도 국가에서 책임지고 있지 않다. 시설종사자의 낮은 보수는 근로시간을 감안하면 1/4나 1/6 밖에 안된다. 근무에 대한 일반조건의 구비는 시급하다.

3) 부랑인 복지사업의 전문성 결여에 대한 문제점

① 시설장을 포함한 종사원의 비전문성

② 입소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및 주기적 상담서비스의 빈약성

③ 정서적 치료를 요하는 자에 대한 방치

④ 퇴소후의 형식적 사후관리등

4) 행정관사와 시설간의 협조관계에 대한 문제점

담당직원의 비전문성과 잦은 교체가 주원인

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에서 보는 개선방안 다음과 같다.

1. 복합성인시설로의 전화:수용보호된 부랑인들을 유형별로 나눠 특성에 맞는 재활치료 및 직업재활교육을 활성화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성인시설로 전환한다.

2. 시설보호방법의 사회화

시설보호는 시설수용->생계보호->자립능력배양->사회복귀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나 전문종사자의 부족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전문종사자의 확보로 시설입소단계에서부터 퇴소단계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서 전문서비스의 방법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3. 법규 개선

입소 절차: 단속-> 시설내 심사대기실에 위탁보호-> 신상기록카드작성-> 입소심사위원회-> ①시설의뢰 ②퇴소

입소관정을 위해 10일동안 부랑인시설에 위탁보호하고 있다. 입·퇴소위원회 위원장은 시장, 군수 위원은 종교인, 사회복지전문가, 의사, 교육자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 어려움이 많다. 오히려 시설장의 권한으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결국 사회복지부 훈령 제523호 부랑인복지시설운영규정을 보완해 부랑인복지법을 제정해야할 요구하고 있었다.

< 참고자료 >

- 공상길 『부랑인의 재활서비스에 관한 연구』 단국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1991
- 노순희 『부랑인을 위한 사회사업 서비스의 개발에 관한 연구』 숭실대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석사논문, 1990
- 백남영 『부랑인을 위한 교회의 그룹 홈 설립과 운영에 관한 연구』 숭실대 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석사논문, 1994
- 정태용 『부랑시설노인의 생활실태와 사회복지』 대구대 사회개발대학원 석사논문, 1992
- 한국부랑인(아)복지시설연합회, "부랑인복지시설의 현황 및 개선방안", 1994
- 1995년 국정감사 자료중 보건사회부 관련 자료
- 하야가와 가즈오 편저, 문영기 옮김, 『주택과 인권』, 범론사, 1995
- "인권말살의 현장-부랑인 수용소", 월간 말, 1987.3
- 김종석, 르뽀 "현주소없는 강남구룡마을 특별시민들", 월간 말, 1994. 10
- 김택환, "세상 밖으로 버려진 부랑아들" 월간 말, 1994.12
- 박원순, "빌어먹을 권리", 월간 샘이 깊은 물, 1995.1
- 사카모토, "빈집은 우리 모두의 것 -네덜란드 젊은이들의 주택점거운동, 그 현장", 한겨레21, 95.4.27
- 카네코[金子雅臣], 『홀리스가 되었다』 -대도시를 떠돌다-, 築地書館, 1994
- 혜진, "한국 스님이 만난 뉴욕 할렘가 '홀리스'들", 월간 말, 1994.12
- 홍세화, 파리통신 "파리에 오시는 분은 [가로등]을 사시라", 월간 말, 1995.8
- 다큐멘터리영화, "우리는 전사가 아니다", 푸른영상 제작, 박기복 연출, 1994.7-11
- 森川直樹, 『실록 홀리스란!?', 산도케출판국, 1994
- 岩田正美, 『전후사회복지의 발전과 대도시최저변』, 미네르바서방, 1995
- 신쥬꾸노쥬꾸 노동자의 생활·취로보장을 요구하는 연합회의 발행, 『新宿 홀리스』, 1995
- 제임스 D. 라이트 저, 谷喜美子 역, 『홀리스』 -미국의 그늘-, 三一書房, 1993

보안관찰법의 내용과 본질

이 창 호
경상대 법학과 교수

1. 서론

“사회안전법은 보안관찰법이라는 불륜의 새끼를 낳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 가고 있다. 이윽고 보안관찰법도 그 어미처럼 초라하게, 비굴하게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 가리라. 이것이야말로 '역사적 필연'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는 이 역사적 필연 속에서 또 다시 초라하게, 비굴하게 사라져 갈 보안관찰법에 다시 한번 조소와 야유를 던져 줄뿐이다.”¹⁾

위의 인용문은 사회안전법이 폐지되고 난 직후 사회안전법 폐지에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던 서준식씨가 사회안전법의 대체입법인 보안관찰법의 운명에 관하여 예언적으로 피력한 글이다. 그로부터 무려 6년도 더 지난 오늘날까지 물론 그 예언은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법에 의하여 서준식씨는 최초로 그리고 유일하게 구속되기까지 하였다.

한국의 법체계 중 가장 악명 높은 법이 국가보안법이라고 말할 하지만, 보안관찰법은 바로 그 악명 높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만신창이가 된 사람들에게 대하여 또 다시 이중의 굴레를 씌우고 그 굴레를 중신토록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창살 없는 감옥'을 제공하는 법이다. 한마디로 법의 이름을 빌린 국가권력의 폭력적 야수성이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는 법이 바로 보안관찰법이다.

서준식씨가 지난 1991년 최초로 보안관찰법 위반죄로 구속된 사건 이후, 보안관찰법에 대한 세인의 관심은 다시 수그러지고 말았다. 이 법 자체에 의하여 그 숫자를 알 수 없는 수많은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들이 이 법의 위력에 짓눌려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는데도 법학자들은 이 법의 폭력성과 위헌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대체로 침묵을 지키고 있다.²⁾

1) 서준식,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악법(사회안전법), 서울의 소리 89년 8월호, 79쪽

2) 보안관찰법에 관한 법학자들의 비판적 논의로는 배종대 교수와 이승호 교수의 글만이 보일 뿐이다. 배종대, '사회안전법 및 보안관찰법에 관한 비판적 고찰', <법과 사회> 창간호, 1989, 43-52쪽, 그리고 이승호, '보안관찰법 폐지론', <법과 사회> 제5호, 1991, 196-212쪽

보안관찰법이 제정된 지 벌써 6년 여가 흐른 지금 다시 이 법에 대하여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이 법이 국가보안법과 함께 우리 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갈망하는 모든 진보적인 사상과 사람을 창살 있는 감옥과 창살 없는 감옥으로 가둠으로써 우리 사회의 진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보안관찰법의 문제는 특정범죄를 저지른 자를 보안관찰함으로써 제기되는 단순한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에 대한 인권억압의 문제만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의 진보를 가로막는 사상탄압법이기 때문에 그 해악은 사회 전체에 미치며, 그 피해자는 결국 대다수 국민인 셈이다.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의 존재 자체로 말미암아 한국사회는 아직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다. 다수 국민의 일상적 삶을 철두철미하게 감시하고 통제하는 제도가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사회를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라 부를 수 없다. 절대 다수 국민의 노동의욕을 상실케 만드는 권력형 부정부패에는 온갖 핑계로 면죄부를 주면서, 유독 공안범죄에 대해서는 이렇게도 철저하게 따라붙는 공안권력의 행사를 어떠한 법이론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까.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보안관찰법이 얼마나 철저하게 과거의 공안사범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통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권력의 행사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권력의 욕구가 무엇인지, 그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내용이 무엇인지, 나아가 보안관찰법의 폐지가 갖는 역사적 의의와 그 방법론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2. 보안관찰법의 연혁

1) 사회안전법중 개정법률로서의 보안관찰법

1989년 소위 여소야대 국회에서 5공청산의 일환으로 성립된 '민주발전을 위한 법률개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악법개폐를 위한 작업이 이루어졌다. 6월 항쟁 이후 고양된 민주화의 열기는 우리 사회의 민주발전을 저해하였던 대표적 반민주적 악법들을 국회 차원에서 논란의 대상으로 삼게 만들었다. 그 논의 중에 대표적인 악법으로 국가보안법과 사회안전법이 포함되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의 개폐 논의는 당시 야당의 폐지론 내지 대체입법론이 우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의 힘의 논리와 보수야당의 한계 때문에 아무런 성과를 보지 못하고 대신에 사회안전법이 도마 위에 올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사회안전법의 폐지를 요구하던 당시 평민당과 민주당의 주장도 집권여당인 민자당과 공화당의 개정론을 돌파하지 못하고 결국 사회안전법중 개정법률로서 보안관찰법이 제정되게 되었다. 다시 말해 보안관찰법은 죽은 사회안전법의 '사생아'로서

그 어미의 죽음이라는 희생(?) 가운데서 출생한 것이다.³⁾ 바로 그렇기 때문에 보안관찰법은 사회안전법의 독소 조항을 부분적으로 호도하면서 훨씬 더 강력한 감시와 통제의 그물망을 광범위하게 구축하는 데 성공하였던 것이다. 보안관찰법은 악명높았던 사회안전법상의 보안감호처분과 주거제한처분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보호관찰처분 제도를 보안관찰처분으로 명칭을 바꾸고, 그 작동의 메카니즘을 대폭 정비하여 사회안전법 폐지로 혹시 생길지 모르는 물살틈없는 감시의 체계를 설치하고 있다.

2) 보안관찰법의 모태는 일제하 사상범보호관찰령이다

이렇게 출생한 보안관찰법의 모태는 사회안전법과 마찬가지로 일제 하에서 민족해방운동을 탄압했던 1936년 사상범 보호관찰법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것은 오늘날의 보안관찰법과 당시의 사상범 보호관찰법의 조문을 비교해 보는 것만으로도 확인된다. 조문을 비교하기에 앞서 일제하의 사상범보호관찰법의 입법목적에 대하여 알아보자.

일제는 1931년 만주사변을 신호탄으로 대륙침략의 야욕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본국의 반정부·반체제적 움직임을 봉쇄하기 위하여 1925년의 치안유지법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중·삼중의 그물망으로서 1936년 사상범보호관찰법을 제정·시행하고, 이를 속국인 조선에도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 대륙침략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서 본국과 식민지에서의 반체제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을 잠재우는 것이 필요했음은 물론이다.

일제하의 치안유지법과 사상범보호관찰법의 체계는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사회안전법 및 보안관찰법의 체계로 그대로 답습되었다.⁴⁾ 일제는 본국의 반체제 혁명운동의 사상적 근원을 차단할 목적으로 1936년 5월 공포, 11월에 시행된 '사상범보호관찰법'을 그 해 12월에 총독부 제령으로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에 의해 조선에 시행한다.⁵⁾ 이 법은 현재 국가보안법의 전신인 치안유지법 위반자 가운데 집행유예, 기소유예, 가출옥, 형집행 종료자에 대하여, 즉 치안유지법에 저촉되어 '사상범'이 된 자에 대하여(제1조) '보호관찰소'의 '보호사'(保護司)가(제3조), 그들의 사상과 행동을 감시하는 것이었다(제2조).⁶⁾ 보호관찰의 결정은 '보호관찰 심사회'에서 행하고(제1조), 필요시에는 심사

3) 이승호, 앞의 글, 197쪽 참조

4) 일제의 치안유지법은 1925년 제정되었으며, 사상범보호관찰법은 만주사변 이후 일제의 군국주의적 야망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그 체제 정비의 법적 기초로서 1936년에 제정되었다. 이것은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1948년 제정되고, 보안관찰법의 전신인 사회안전법이 1975년의 상황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제정된 것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5) 일제 본국에서의 사상범보호관찰법 및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의 입법취지는 치안유지법 위반자 가운데 '依然히 불은사상을 抱懷하여 치열한 투쟁의식'을 가진 자에 대한 '경계를 엄중히 할 필요'와 '불은홍약사상을 근절하기 위해 긴급하다'고 되어 있다. 현대사자료 45 <치안유지법>, 興平康弘 해설, 273쪽, 鈴木敬夫, <법을 통한 조선식민지 지배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9, 260쪽에서 재인용.

6) 보호사는 '보호관찰소관제'(칙령 제403호, 1936)에 의거하여 보호관찰소장에 의해 '사상범의 보호관찰에 경

회의 결정 이전에도 보호관찰이 가능하게 되어 있었다(제6조). 이에 따라 사회주의자 및 민족주의자 중 전향하지 않은 사람들을 '사상범'으로 규정하여 보호관찰의 대상으로 삼았다.

사상범보호관찰법과 현행 보안관찰법의 유사성은 양법의 거의 대부분의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사항만 열거해보자. 첫째로, 사상범 보호관찰처분의 대상자가 현행 국가보안법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치안유지법 위반의 사상범인 것과 유사하게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는 주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공안사범이므로 양법 모두 사상범 탄압법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사상범보호관찰법 제1조 및 보안관찰법 제3조). 둘째로, 양법은 피관찰처분자에 대하여 철저히 감시와 통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즉 피처분자의 자유를 극도로 제약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사상범보호관찰법 제2조 이하 및 보안관찰법 제18조 이하). 셋째로, 사상범보호관찰법은 보호관찰심사회의 결의에 따라, 보안관찰법은 보안관찰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처분을 한다는 점에서 양법 모두 보안처분을 사법심사를 거치지 않고 행정처분으로 처리하는 점에서 동일하다(사상범보호관찰법 제1조 등 및 보안관찰법 제12조). 네째로, 양법은 모두 보호(보안)관찰 기간을 2년으로 하고 무기한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종신토록 자유를 구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동일하다(사상범보호관찰법 제5조 및 보안관찰법 제5조). 이외에도 양법은 많은 점에서 유사한 반면에, 양법의 차이점은 비교적 사소한 사항 뿐이다.⁷⁾

보안관찰법의 연혁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우리는 동법이 일제하의 사상범에 대한 탄압을 위한 전시 특별법에서 유래한 것이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극도로 제약되었던 군국주의의 식민지 통치하에서 적용되던 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그리고 더 치밀하게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법임을 확인할 수 있다.

3. 보안관찰법의 내용과 문제점

1) 보안관찰법의 적용대상

보안관찰법의 내용은 그 적용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이고, 그들에게 어떠한 굴레를

협있는 자 및 그의 적당자가 임명되고, 극히 세목에 걸친 '조사' 및 '관찰'을 했다. 그 구체적 내용과 절차는 '사상범 보호관찰법 시행령'(칙령 제401호, 1936)에 규정되어 있다.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鈴木敬夫, 앞의 책, 262-263쪽 참조.

7) 양법의 차이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상범보호관찰법은 원칙적으로 치안유지법을 위반한 사람이 집행유예, 기소유예, 가출옥 등을 한 경우 즉 형벌대체적 성격이 농후한데 비하여, 보안관찰법은 원칙적으로 형벌 집행이 종료된 사람에게 적용되는 부가적 보안처분이라는 점이다(사상범보호관찰법 제1조 및 보안관찰법 제3조).

씩우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보안관찰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안관찰 해당범죄'는 다음과 같다.

① 형법상의 내란목적살인죄(형법 제88조), 동 미수죄(형법 제89조), 동 예비·음모죄(형법90조), 외환유치(제92조), 여적(제93조), 모병이적(제94조), 시설제공 이적(제95조), 시설파괴 이적(제96조), 물건제공 이적(제97조), 간첩(제98조) 및 이러한 범죄들의 미수(제100조)와 그 예비·음모(제101조)

② 군형법상의 반란죄(군형법 제5조) 및 반란목적의 군용물 탈취죄(제6조)와 양범죄의 미수(제7조) 및 예비·음모(제8조), 이적목적 반란불보고죄(제9조 제2항), 군대 및 군용시설 제공, 군용시설 등 파괴, 간첩, 일반이적 및 동 범죄의 미수·예비·음모(제11조 내지 16조)

③ 국가보안법상의 목적수행죄(제4조), 자진지원·금품수수죄(제5조), 편의제공 중 무기제공죄(제9조 1항 및 3항)

④ 보안관찰법 부칙 제2조에 의한 구형법, 구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1948년 제정 이후 현행 국가보안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의 구 국가보안법, 구 반공법, 구 국방경비법, 구 해안경비법의 상기 1-3호에 상응하는 범죄.

상기의 보안관찰 해당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이다(법 제3조). 보안관찰법은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이다. 다시 말해서 보안관찰법은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중에서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일부의 소위 미전향의 공안사범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는 법이 아니라 법 제2조 및 제3조가 규정하고 있는 모든 공안사범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법이다.⁸⁾

이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의 특징은 첫째로 보안관찰법이 예정하고 있는 보안관찰처분 대상자가 소위 '공안사범'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즉 보안관찰법은 한마디로 공안사범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는 법이다. 둘째로, 보안관찰법은 현재의 공안사범 뿐만 아니라 과거 해방직후의 좌익 사범에까지 그 적용의 마수를 뻗치고 있다. 살인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경우에도 형기를 마치고 나면 법적으로는 더 이상 어떠한 관리대상으로도 되지 않는데 비하여, 보안관찰법은 대한민국 수립 이전의 구 국방경비법과 구 해안경비법을 위반한 좌익사범에게까지 이미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놓치지 않고 감시하고 있는 무서운 법이다. 해방 직후부터 한국전쟁을 치르는 기간 동안 좌우의 이념대립 보다는 사소한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빨갱이'로 낙인찍혀 공안사범이 되어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 경우까지도 집요하게 추적하여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권력의 무지막

8) 지금까지 형법상의 내란목적 살인 및 외환의 죄와 군형법상의 반란 등의 죄는 적용된 경우가 거의 없다. 상기의 보안관찰 해당범죄 중에서 지금까지 실제로 적용되어 온 대부분은 주로 국가보안법(반공법을 포함) 위반사범들이다.

지한 남용 내지 횡포라 아니할 수 없다.

보안관찰법의 목적은 동법이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로 포괄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권력의 끈질긴 추적과 통제에 있다. 과거 냉전시대에 공안사범 사이에서 유행하였던 “미전향 사상범은 절대로 살아서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말이 보안관찰법에 의하여 그대로 계승·실현되고 있다. 더우기 그 적용대상이 과거 사회안전법상의 보안감호 처분대상자 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있다. 다만 보안감호에 비하여 좀 더 넓은 감옥이라 할 수 있는 일종의 ‘사회내처우’이기는 하지만, 보안관찰법은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모두에게 그 사상의 전향 여부를 불문하고 평생 동안 예외없이 창살없는 감옥을 제공하고 있는 법이다.

2) 보안관찰처분의 절차

보안관찰처분은 제3조에서 규정한 보안관찰처분 대상자가 보안관찰 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제4조),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제7조),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제12조), 법무부장관이 결정한다(제14조). 검사의 보안관찰처분 청구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법 제11조의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안관찰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신규의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이든 아니면 기존의 피보안관찰자이든 간에 보안관찰처분이 면제될 수 있으려면,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법정신이 확립되고, 일정한 주거와 생업이 있으며, 그리고 검사 또는 일정한 지위에 있는 2인 이상의 신원보증인의 신원보증이 있어야 한다는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면제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앞서서도 밝혔듯이 법 제3조가 규정하는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모두가 일정한 신고를 하고(제6조), 그에 의거하여 검사가 보안관찰처분의 청구 또는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의 청구를 하게 된다는 점이다(제7조 및 제11조 제3항).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에 대해서는 면제결정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은 언제든지 면제결정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일단 한번 보안관찰처분 대상자가 되면 항상 보안관찰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죽을 때까지 불안과 초조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다.

또한 보안관찰처분의 면제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준법정신의 확립’이라는 요건은 정말 난해한 요건이다. 어떠한 사람이 준법정신이 확립된 사람인지는 현대의 정신분석학으로도 측정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요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소위 반성문 내지 전향서의 제출을 근거로 삼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보안관찰법에서는 전향문제를 준법정신의 확립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그럴듯하게 은폐하고 있지만,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여러 곳에서 전향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노출되

어 있다.⁹⁾ 보안관찰법이 얼마나 전근대적인 발상에 근거하고 있는지가 바로 이 점에서 확연하게 폭로되고 만다. 전향제도에 관해서는 뒤에서 다시 다루기로 한다.

3) 보안관찰의 내용

보안관찰법이 규정하고 있는 감시와 통제의 체계는 한치의 틈도 없는 치밀한 그물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안관찰법의 그물망은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해서 법이 예정하고 있는 통제의 그물망 보다 훨씬 더 촘촘한 망을 짜놓고 있다. 이 점은 보안관찰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감시와 통제의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세밀하게 살펴보자.

첫째로, 모든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는 죽을 때까지 보이지 않는 경찰의 감시대상이 된다. 누구든지 보안관찰처분 대상자가 되면 인적 사항, 가족 및 교우관계, 입소전의 직업, 본인 및 가족의 재산상황, 학력, 경력, 종교 및 가입단체, 병역관계, 출소예정일, 출소후의 거주예정지 및 그 도착예정일, 보안관찰 해당범죄사실에 관한 상세한 자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6조 제1항). 이 신고서와 관계서류는 대상자가 어디를 가든지 신거주지 관할경찰서장 등에게 송부된다(시행령 제9조 제4항). 그리고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에 대하여는 항상 동태파악을 하게 되어 있으며(시행령 제11조),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관리부’가 작성되고(시행규칙 제9조), 동태파악에서 소정의 변동사항이 기록되고 검사에게 보고된다. 그리고 이 관리부는 준영구적으로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시행규칙 제52조 제10호).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모두에 대한 이러한 영구적인 감시제도는 보안관찰법에서는 어느 조항에서도 예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입법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해서 세밀하게 제도화되어 있다. 이러한 사항은 분명 행정부의 행정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입법부에 대한 월권행위이며, 행정권의 입법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여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로,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사람은 앞에서 설명한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에 대한 감시와 통제 보다 훨씬 더 엄격한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된다.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사람은 항상 관할경찰서의 동태관찰의 대상이 되며, 앞의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관리부에 등재되어 있음에도 다시 또 ‘보안관찰부’에 등재되며(동법 시행령 제4조), 이 보안관찰부에는 1개월마다 기재사항의 변동이 기록되어 준영구적으로 보관된다(시행령 제24조 제4항, 시행규칙 제41조 제4항 및 제52조 제9호). 피보안관찰자는 보안관찰처분 결정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고(법 제18조 제1항), 3개월마다 그 변동사항이 있든 없든 간에 주요 활동사항, 통신·회합한 다른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의 인적 사항과 그 일시 및 장소와 내용, 여행에 관한 사

9)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6호,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19조 제2호 등 참조

항, 기타 관찰경찰서장이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18조 제2항). 제18조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도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법 제18조 제3항), 주거지 이전, 국외여행, 10일 이상의 국내여행 시에도 소정의 사항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18조 제4항 및 시행령 제24조 제2항). 피보안관찰자는 상기의 신고의무 등에 의하여 통제의 대상이 된 데에다가, 여행을 하는 경우 에까지도 여행목적지 관찰경찰서에 의하여 항상 동태파악의 대상이 될 정도로 철저히 감시를 당하면서 살아야 한다(시행규칙 제42조).

셋째로, 보안관찰법은 피보안관찰자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하여 일정한 '지도'와 조치를 할 권한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에게 주고 있다(법 제19조). 그런데 지도의 내용을 보면, 피보안관찰자와의 긴밀한 접촉으로 '항상' 그 행동 및 환경 등을 관찰하는 것, 피보안관찰자의 신고사항 이행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다. 지도의 내용은 지도라는 미명하에 행해지는 항상적인 감시와 통제 이외의 그 무엇도 아니다. 또한 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관찰 해당범죄를 범한 사람과의 회합·통신의 금지¹⁰⁾, 일정한 집회 또는 시위 장소에의 출입 금지,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의 권한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에게 주고 있다. 지도라는 이름하에 철저히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네째로, 보안관찰법은 피보안관찰자의 개선과 자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주거 또는 취업의 알선, 직업훈련 기회의 제공, 환경 개선 등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20조). 이 규정은 피보안관찰자에 대한 배려로서 유일한 규정이지만, 실제로 이 규정에 의한 보호가 현실성이 없음은 최근에 보안관찰 해당범죄를 범한 사람의 평균적인 지적 수준과 능력에 비추어 볼 때에 명확하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보안관찰의 대상으로까지 몰고 간 국가권력의 폭력성을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에게 다시 그 권력의 굴레를 씌우는 제도에 해당하는 '보호'의 대상이 되겠다는 어리석은 사람은 극히 예외적으로나 존재할 것임에 틀림없다. 오히려 문제는 이러한 보호의 규정이 보안관찰법의 감추어진 발톱을 은폐하기 위한 장식 규정에 불과하다는 점이다.¹¹⁾

다섯째로, 보안관찰법은 동법에서 부과하고 있는 일정한 감시의 체계를 벗어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형벌로써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가 은신 또는 도주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내지 피보안관찰자가 일정한 신고의무 기타 지시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동법은 보안관찰처분

10) 가족보다 더 가까이 수십 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동안 동고동락하였던 같은 보안감호소 출소자들과의 회합·통신마저 통제하는 것은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을 제약하고 나아가 인륜을 짓밟는 반인간적 규정이다.

11) 실제로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청주 보안감호소에서 출소한 후 1년 남짓만에 생활고를 비판하여 자살한 정대철씨의 경우를 보면 이러한 규정이 하나의 허울에 지나지 않음을 극명하게 알 수 있다. 박금숙, 어느 빨치산 장기수의 못다 부른 노래, 월간 <말>지, 1991년 2월호, 146쪽 이하 참조

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를 은닉 또는 도주케 한 경우까지도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법 제27조). 이러한 처벌 규정은 보안관찰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악용될 여지가 많은 규정이다.¹²⁾ 한가지 특기할 것은 보안관찰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형벌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보안관찰에 관한 사항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처리함으로써 동법의 위력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에서 규정된 것이다. 또한 이 규정을 근거로 보안관찰에 관한 일체의 통계자료조차 파악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안관찰법은 일단 한번 보안관찰 대상자가 되지만 하면 본인의 생전 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은 권력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영구적으로 권력의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점은 보안관찰에 관한 제반 기록의 보존기간을 정하고 있는 규정에서 표현되고 있다. 보안관찰법 시행규칙은 보안관찰처분 결정서, 거소제공·변경 결정서, 사안기록, 보안관찰처분 사안 접수처리부, 보안관찰처분 사안부, 보안관찰처분 기간 갱신부, 집행원부, 거소제공 대상자 관리부, 보안관찰부,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관리부, 조사관계예규철, 조사종결 사안철, 조사미제 사안 기록철 등의 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을 영구 내지 준영구로 보존토록 규정하고 있다(시행규칙 제52조). 이러한 기록의 영구적 보존 규정은 본인의 생전에는 물론 그 후손에게까지 사상범의 후예라는 낙인을 새겨 억압의 굴레를 대대로 존속시키려는 권력의 음습한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4. 보안관찰법의 위헌성

1) 보안관찰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 법이다

앞에서 우리는 보안관찰법의 내용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및 피보안관찰자에게 가해지는 감시와 통제의 절차와 내용을 확인하였다. 국가가 한 인간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옳다고 믿고 한 행위에 대한 대가로 적어도 실행이라는 가혹한 처벌을 한 것만으로도 불충분하여 생애의 전기간에 걸쳐서 그 일거수 일투족까지 권력에 의한 감시와 통제의 체계 속에 가두는 것은 어떠한 형벌이론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실로 가혹한 처벌이라 아니할 수 없다.

보안관찰법에서 규정하는 감시와 통제의 체계는 인간을 마치 사육하는 동물처럼

12) 보안관찰법의 처벌 규정의 악용 사례는 앞에서 언급한 서준식의 경우가 그 단적인 예이다. 당시의 상황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준식, 보안관찰법 - 나에게 채워진 족쇄, 내가 풀어야 할 족쇄, 한국기독교 인권위원회 간 <월간 인권> 제2호, 1992년 4월호 참조

취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람을 교도소나 감호소에 가두는 것은 마치 동물을 우리에게 가두어 사육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듯이, 보안관찰 제도는 마치 인간을 동물처럼 그 우리에서 꺼내어 풀어 놓고 사육하면서 주인이 그 근처에서 항상 감시의 눈길을 떼지 않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 보안관찰법은 일제하의 전근대적인 식민지적 탄압법의 내용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 반문명적 반인간적인 법률임을 알 수 있다.

보안관찰법은 결코 제3자가 확인할 수 없는 인간의 내면적 사상을 문제삼아 지배 권력의 입장과 배치된다고 파악되는 한, 일생 동안 권력기관의 감시와 통제의 틀에 매어 놓는 법이기에 현대의 자유로운 문명사회의 법이 아니다. 특히 보안관찰처분 면제 결정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준법정신의 확립'이라는 요건은 어떠한 객관적 기준으로도 측정·판단할 수 없는 순수하게 내면적인 인간의 심리상태인데도, 그러한 기준에 의해 무지막지한 공안권력의 처분의 객체로 삼고 있는 보안관찰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 법률이다. 법률의 이름을 빈 폭력에 다름 아니다.¹³⁾

2) 보안관찰법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법률이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며,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따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안관찰법은 합리적인 기준이 없는 일반법과 사상범의 구별을 전제로 하여 사상범에게만 특히 가혹한 보안관찰 제도를 실시하는 법이기 때문에 평등권에 위배되는 법률이다.

3) 보안관찰법은 죄형법정주의 및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법률이다.

보안관찰법에서 규정하는 보안관찰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보안처분이 행정기관의 판단에 맡겨도 좋은 경우는 그것이 형벌을 대체하는 것일 경우에 한한다.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 대신에 자유를 제한하는 보안처분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굳이 사법부의 판단에 맡길 이유는 없다. 그러나 보안관찰법은 형벌을 집행받은 사람에게 다시 이중적으로 보안처분을 부과하기 때문에, 당연히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헌법해석과 형법이론상 마땅하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오로지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져 있는 보안관찰처분 절차는 헌법 제12

조 제1항의 신체의 자유,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또한 보안관찰 제도는 헌법 제13조 제1항의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중처벌의 금지 조항에도 위배되는 제도이다. 나아가 보안관찰법은 그 적용대상이 보안관찰법 적용 이전의 행위자에게도 적용되므로 당연히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처벌의 금지 조항에도 위배된다.

보안관찰법 제4조가 보안관찰처분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안관찰 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는 아무런 객관적인 기준이 있을 수 없는 추상적이고도 애매한 요건이다. 따라서 이러한 막연한 규정에 의해 자유의 주요부분을 크게 제약하는 보안관찰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중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라 아니할 수 없다.

4) 보안관찰법은 사생활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법률이다.

보안관찰법 제6조 및 제18조 등에 의해 부과되는 각종의 신고의무에 관한 규정은 신고사항으로 교우관계 등의 개인의 사생활의 깊숙한 부분까지도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동태보고에 관한 내용도 개인의 사생활을 파악하지 않고는 행해질 수 없다. 또한 보안관찰법 제19조 제1항에서 지도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항상 그 행동 및 환경 등을 관찰하는 것"도 사생활에 대한 깊숙한 관찰을 의무지우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안관찰법은 헌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법률이다.

보안관찰법 제19조 제2항의 일정한 자와의 회합·통신의 금지, 일정한 집회 또는 시위 장소의 출입 금지, 특정 장소에서의 출석 요구 등에 관한 규정은 헌법 제18조의 통신의 자유, 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규정이다. 또한 피보안관찰자가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국외 여행 또는 10일 이상의 국내 여행을 할 경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보안관찰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은 헌법 제14조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이다.

5) 보안관찰법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유린하는 법률이다.

보안관찰법은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의 요건으로 '준법정신의 확립'을 요구하고 있으며, 실무상 이러한 준법정신의 확립의 판단기준으로 전향서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이러한 전향제도는 전근대적 군국주의 시대의 역사적 유산이며 현대 문명국가에서는 사라진 지 오래된 제도이다. 전향제도는 헌법 제19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유린하는 제도이다. 양심의 자유는 인간 정신활동의 자유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모든 기본권의 근원이 되는 최상급의 기본권이며 법

13) '준법정신의 확립'이라는 요건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소위 '전향'제도야말로 과거 군국주의 식민통치의 유산으로서 문명국가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반인간적인 제도임은 물론이다. 전향제도의 법적 기원은 1932년 일제의 '사상범인에 대한 유보처분 취급규정'(사법대신훈령 제2,006호) 제2조 제7호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鈴木敬夫, 앞의 책, 251 쪽 이하 참조

률로도 제한될 수 없는 성질의 절대적 기본권이다.

양심의 자유는 당연히 사상의 자유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¹⁴⁾ 양심의 자유는 사상 및 양심의 형성과 유지의 자유이다. 양심의 자유는 인간이 자신의 논리적 판단에 따라 가치판단을 할 수 있는 양심을 형성할 자유와 자신의 양심상의 결정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아니할 침묵의 자유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향제도는 특히 자신의 내면적 정신세계의 영역에 속하는 사상에 대해서 침묵함으로써 자신의 사상 및 양심을 유지할 침묵의 자유를 유린하는 제도이다.

보안관찰 대상자들이 왜 전향을 거부하면서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자신이 어떤 주의자로 낙인찍히는 것 자체가 자신의 진짜 모습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어떤 한 인간이 가진 사상은 매우 잡다한 사상의 혼합체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권력이 한 인간을 어떤 주의자로 분류하고 그에 대한 고백과 반성을 요구하는 전향제도는 권력의 흑백논리에 의한 폭력행사에 다름 아니다.¹⁵⁾

5. 보안관찰법의 성격과 본질

1) 보안관찰법의 성격

보안관찰법은 특별형법의 특별형법이라는 이중의 특별형법이다. 보안관찰법은 형법에 대한 특별형법인 사회보호법에 대한 특별법이다.¹⁶⁾ 보안관찰은 형법상의 보안처분에 해당하는 것이고 보안처분인 이상 형사제도에 속한다.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에 관한 일원주의나 이원주의 중 어느 입장을 취하더라도 보안처분은 형사제제이다. 보안관찰법이 규정하는 보안관찰 제도는 사회보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관찰 제도와 유사한 보안처분이다. 사회보호법은 수개의 형을 받거나 수개의 죄를 범한 사람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때에 보호감호, 치료감호 또는 보호관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법률이다.

보안관찰법이 규정하고 있는 보안관찰은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관찰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적용된다. 즉 사회보호법은 적어도 상습성이 인정되는 범죄자에게만 적용되는 데 반하여 보안관찰법은 단 한차례의 범죄만 있어도 적용된다. 또한 사회보호법상

14)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1992, 422쪽 이하 참조

15) 이 점에 관한 통렬한 고발은 다음 인용문에 표현되어 있다. "전향이나 아니나의 문제는 사상에 대한 밀찰력의 문제가 아니라 손톱 속에 삽입되는 대나무 박편(薄片)을 견디어 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다. 그것은 육체의 문제, 특히 신경의 문제였다." 이 인용문은 전향제도의 폭력성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다. 서준식, <전향 - 영광과 오욕의 날카로운 대치점>이라는 미발표 수고 중에서 인용

16) 배종대, 앞의 글, 47쪽 이하 참조

의 보호관찰은 보호감호나 치료감호에서 가출소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데 반하여, 보안관찰은 그러한 제한없이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이렇게 볼 때에 보안관찰법은 사회보호법의 특별법이라 할 수 있다. 형법은 일정한 정도 사회의 윤리적 가치체계가 반영되는 만큼, 일반적으로 형법체계도 자연히 일반국민의 상식 수준에서 인식 가능하도록 체계화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관찰법은 특별법의 특별법이라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법체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2) 보안관찰법의 본질

문제는 왜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 보안관찰법을 존치시키고 있는가라는 점이다. 지금까지 고찰한 보안관찰법의 연혁, 내용 및 문제점 그리고 그 위헌성에 대한 논의를 종합해 볼 때 보안관찰법은 사상범탄압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안관찰법의 본질은 바로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있다. 보안관찰법은 사상범에게는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어떠한 자유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지배권력의 의지의 표현이다. 그렇게 함으로서 결국 일반국민으로 하여금 지배권력에 위협한 사상에 대해서는 일체의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이다. 따라서 보안관찰법은 '사상범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 아니라 일반국민 모두의 '사상의 자유'를 박탈하는 법률로 기능하게 된다.

만약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면 공산주의자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판명할 것인가? 그가 과거에 지은 죄목으로 판단한다면, 그에 대한 처벌은 이미 받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에 대한 형벌의 집행을 통하여 그를 개선·교화시키지 않았는가? 그러치 못했다면 형벌제도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보안관찰보다 더 무서운 형벌로도 해결하지 못한 과제를 보안관찰제도로써 유지하고자 하는 권력의 목표는 무엇인가? 피보안관찰자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두려운 것은 바로 국민 일반이다. 그러기에 보안관찰법은 전체 국민으로 하여금 지배권력에 위협한 사상을 머리 속에서도 가져서는 안된다는 위협을 하는 무서운 법률이다.

사상은 사회의 역사적 조건으로부터 형성되지만, 나아가 그 사회의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기도 한다. 사상의 자유가 말살되는 국가는 그 사회의 모순에 대한 일체의 비판마저 봉쇄된다. 그렇기에 사상의 자유는 모든 문명국가에서 절대적 권리로서 인정되고 있다. 보안관찰법은 그러한 의미에서 반문명적인 법률이다. 사상의 자유의 박탈은 사회의 진보적 발전을 위한 원동력을 봉쇄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사상범이라는 이유만으로 평생 동안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되어야 할 정당성의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으며, 국민일반의 사상의 자유가 제한받아야 할 이유도 없다. 좌우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거의 극복되고 통일을 위한 남북간의 논의가 활발한 오늘날에까지 전근대적 반문명적 식민법제의 유산인 보안관찰법을 유지해야 할 이유는 도대체 없다.¹⁷⁾ 그 정도로 한국의 자본주의 체제가 허약하지는 않다. 지금 그 소중한 사상

의 자유가 제한되어야 할 이유와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¹⁸⁾

6. 결론

이상의 고찰을 통하여 보안관찰법은 공안사범이라는 '희생양'을 불모로 하여 국민 일반의 권력에 대한 비판과 저항을 봉쇄하는 '권력의 경제책'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공안사범'과 '공안기관' 그리고 '공안관계법'이라는 3자는 한국사회의 국가권력과 법질서를 지탱하는 중요한 버팀목의 역할을 해 왔다. 공안기관은 공안관계법으로 공안사범을 만들어 내면서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여 권력의 정당성의 위기를 돌파해 왔다. 보안관찰법은 공안기관이 공안사범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보안관찰법의 임무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보안관찰법의 임무는 국가보안법과 함께 우리 사회의 진보와 희망을 압살하는 법이다.

문제는 보안관찰법이 폐지된다고 해서 공안사범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더더욱 공안관계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보안관찰법의 폐지 주장에 앞서서 공안사범을 양산해 내는 공안관계법의 철폐가 먼저 주장되어야 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공안기관의 철폐 주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와 같은 비민주적인 공안기관과 공안관계법이 존재하는 한 공안사범은 필연적으로 재생산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공안을 필요로 하는 비민주적인 정치·경제질서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소수 특권층의 권력과 부를 유지하는 일에 공안기관과 공안권력이 잘못 사용되고 있다.¹⁹⁾²⁰⁾ 소수의 지배집단의 이익을 공공의 이익 내지 안전으로 치환하고 있는 현재의 권력적 지배질서의 근본적 변화가 추구되어야 한다. 국가권력의 궁극적 주인은 국민인 이상 국민의 힘으로 전도된 가치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참된 '공안'은 대다수 국민의 삶의 안정이 보장될 때에 유지된다.

보안관찰법은 상대적이긴 하지만 도덕적으로 자유로운 양심법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법이다. 양심법 내지 확신포에 대한 권력의 통제는 역사적으로 국가형벌권의 남

용으로 판명되어 왔다. 권력의 남용은 항상 권력의 위기로 치닫게 된다. 양심법을 '희생양'으로 삼는 '권력의 경제책'은 결국 권력의 파탄으로 귀결되어 온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교훈이다.

17) 사상탄압법의 핵심인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최근 한국인권단체협의회가 주관한 '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국가보안법이 우리 사회와 시민생활에 끼치는 악영향과 폐해에 관하여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다. 한국인권단체협의회, <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 해방 50주년 기념 인권 심포지엄 자료집, 1995. 10

18) 사상의 자유에 관해서는 조국, 사상의 자유, 살림터, 1992 참조

19) 공안 개념의 이중적 의미에 관해서는 장영민, '법치국가의 관점에서 본 문민정부의 공안',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한국사회의 법과 민주주의>, 관악사, 1994, 116쪽 이하 참조

20) 노동자의 정당한 자주적 단결권 행사에, 도시빈민의 생존권을 위한 몸부림에, 예술인의 예술적 표현에, 학자의 성실한 학문적 성과에, 나아가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에까지 끊임없이 공안의 칼날이 휘둘러져 왔음에 비하여, 5·18문제나 최근 밝혀진 노태우씨의 비자금 문제에 대한 검찰의 수사 태도를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국가보안법 남용의 역사에 관해서는 박원순, 국가보안법연구2, 역사비평사, 1992 참조.

여성관련 국제조약

신혜수

한일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여성의 전화 회장

1. 머릿말

유엔은 1945년에 창설될 때부터 여성의 성차별의 현상을 인식하고 남녀평등권의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유엔 설립 직후 인권위원회(CHR)를 설치하면서, 일반차별문제에 대해서는 산하의 소수민족차별방지 및 보호 소위원회(Sub-Commission)에서 다루도록 하면서 여성의 지위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는 특별한 조언이 필요하다고 하여 1946년 6월 여성지위위원회(CSW)를 독립적으로 설치하였다. 그리고 이 위원회에서 성에 의한 차별문서를 취급하도록 하고 여성의 지위에 관한 제안, 권고 및 보고를 인권위원회와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안하는 권한을 가지도록 하였다. 따라서 남녀평등에 관련한 유엔활동의 대부분은 이 여성지위위원회의 주도하에 이루어져 오고 있다. 이러한 유엔의 조치는 유엔이 설립 초기부터 남녀평등 실현원칙을 중요시하여 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엔에서도 여성문제가 개토화되어 왔으며, 유엔에 근무하는 인력의 고용과 배치도 성차별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여성의 인권과 관련해서는 모든 분야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국제연합헌장,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이 여성의 평등과 인권을 보장하는 기초가 되고 있으며, 여성의 성차별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여성차별철폐협약이 가장 중요하다. 여성차별철폐협약은 1975년 멕시코에서의 제1차 세계여성회의의 영향으로 제정된 것으로, 이후 1980년 제2차 코펜하겐회의, 1985년 제3차 나이로비회의, 그리고 금년 1995년 제4차 베이징회의에 이르기까지 정기적으로 유엔 세계여성회의가 개최되어 여성의 지위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각종 선언과 행동강령을 채택함으로써 여성지위의 향상을 위해 각국이 해야할 임무를 규정하였다.

모든 국제조약은 비준당사국이 지킬 의무가 있으며, 국내법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여성관련 국제조약도 한국이 비준한 것은 한국정부가 지킬 의무가 있다. 다

음으로 선언이나 행동강령은 법적으로 지킬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적 기준으로 작용한다. 선언이나 행동강령은 유엔총회나 특별한 주제를 토의하기 위해 열리는 유엔회의에서 채택된다.

2. 여성관련 조약

여성관련 조약을 논의하기 전에 모든 사람의 인권에 관련되는 일반조약이 있다.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2가지의 국제인권규약이다. 이 4가지는 여성의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천명하고 규정하고 있다.

1) 일반조약

· 유엔헌장(1945) : 성(인종, 언어, 종교)에 의한 차별없는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명시하고 있다.

· 세계인권선언(1948) :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지녔고, 성별 등에 의한 차별없이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지녔다. 또한 동등한 일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 결혼에 있어서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 모성의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A규약

모든 사람의 근로의 권리,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공정한 임금과 어떤 종류의 차별도 없는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권리를 재차 인정하고 있다.

특히 여성에 대하여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와 함께 남성과 같은 근로조건을 보장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 연공서열 및 능력이외의 다른 고려에 의하지 아니하고 승진할 수 있는 기회보장 등이 확보되는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모든 사람이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성의 보호, 유급 또는 적당한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는 출산휴가를 규정하고 있다.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선택의정서(1966): B규약

임산부의 사형집행 금지

결혼과 이혼에 있어서 남녀의 동등권

차별없는 공공생활에의 참여 보장

법 앞에서의 평등과 무차별의 원칙 선언

2) 여성관련 조약 및 선언·행동강령

· 인신매매 및 타인의 매춘착취방지를 위한 협약(1949)

· 여성의 정치적 권리협약(1952)

· 노예제, 노예매매 및 노예제와 유사한 제도 및 관습의 금지에 관한 보충협약(1956)

· 기혼여성의 국적에 관한 협약(1957)

· 혼인에의 동의, 혼인최소연령 및 혼인신고에 관한 협약 및 권고(1962, 1965)

· 여성차별철폐선언(1967)

· 멕시코선언, 세계여성행동계획(1975)

*여성차별철폐협약(1979: 발효는 CEDAW-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나이로비 여성발전전략(1985. Nairobi Forward- Looking Strategies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for the Year 2000)

*여성폭력철폐선언(1993.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비엔나 인권선언 및 행동계획(1993.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베이징선언 및 행동강령(1995. 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

(* 중요 표시)

참고자료로는 한국여성개발원(1994), UN과 ILO의 여성관계조약과 한국여성노동관계법의 비교연구--국내법의 입법과제와 정비방향의 제시--, 94 연구보고서 200-5: 정무장관(제2)실(1994), 유엔과 여성(1)--유엔주관 세계회의 주요문서 여성관련 사항--, 정책자료 94-10: 신혜수(1994), "여성인권운동의 국제화와 한국화", 이화사회학연구회 편, 일상의 삶 그리고 복지의 사회학, 사회문화연구소, pp 149-178

여성차별철폐협약(1979년)

세계여성회의 이후 유엔에서는 여성지위위원회를 중심으로 남녀차별을 금지하는 보다 종합적이고 구체적이며 구속력이 있는 문서를 작성하려는 노력이 거듭되었다. 그 결과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는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이 1979년 12월18일 제34회 유엔 총회에서 찬성 130, 반대 0, 기권 10으로 채택되었다. 이 협약에 내포된 남녀평등원리는 유엔이 설립된 이래 발표된 국제연합헌장,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여성차별철폐선언, 세계여성행동계획과 같은 선언 및 조약 그리고 ILO를 비롯한 국제기관에 있어서 수년에 걸쳐 논의되어 왔던 여성노동을 둘러싼 제문제에의 기본사세를 재정리하여 집대성한 것이다. 즉, 협약은 현대에 있어서 남녀평등의 원리를 가장 명확하게 포괄적으로 그리고 철저한 형태로 표명하고 있는 국제문서이다.

이 협약은 여성차별을 철폐해야 할 4가지 이유로서 (1) 여성차별은 권리평등·인간의 존엄존중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 (2) 여성차별은 국가의 각종활동에 대하여 여성이 남성과 평등한 조건으로 참가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3) 여성차별은 사회와 가족의 번영을 저해하는 것 (4) 여성차별은 국가와 인류에 기여하는 여성의 잠재적 능력의 개발을 방해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1967년의 여성차별철폐선언과 동일하다. 그러나 이 협약은 여성차별철폐선언과 비교해 볼 때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것 외에도 1967년 선언의 채택된 후 12년간에 제기된 여성을 둘러싼 사회의 변화에 수반하여 생긴 이념의 발전이 현저한 점에서 차별성이 두드러진다.

남녀평등의 범리에 관한 협약의 주요한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이 협약은 전통적인 남녀역할 분담이 성차별의 근원이라는 것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고 남녀의 특성론·역할론을 극복한 남녀평등을 도모하고 있다. 즉 협약은 사회에 대한 여성역할의 확대와 가정에서의 남성역할의 확대의 도모라는 새로운 여성관 내지 인간관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협약이 전문(前文)에서 “자녀양육에 있어서의 부모의 역할을 명심하며, 아동의 양육에는 남성, 여성 및 사회전체가 책임을 분담해야 함”과 “남성과 여성사이의 완전한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와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 뿐 아니라 남성의 전통적 역할에도 변화가 필요함을 인식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본문에서 당사국이 남녀의 특성론과 성별역할분업을 변혁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제5조) 그리고 고용분야에서 남녀가 모두 가정과 사회의 노동에 참여하기 위한 노동조건을 창출하여야 하며 특히 보육시설의 충실등 부모가 가정과 직장의 책임, 사회활동에의 참가를 양립시키기 위한 사회서비스의 제공 등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제11조 2e)을 규정하고 있는 점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둘째, 협약은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모든 분야에 있어서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남녀동등의 기초 위에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제1조)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규정은 협약이 직접적 성차별 뿐 아니라 성차별의 의사는 없어도 행위의 결과로써 성차별의 효과를 발생하는 간접적 성차별까지 규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차별을 초래하는 사고방식과 가치관, 이를 배경으로 하는 법제와 그에 기초한 사실, 결과 모두가 차별금지의 대상으로 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협약은 “남성과 여성사이의 사실상의 평등을 촉진할 목적으로 당사국이 채택한 잠정적 특별조치는 본 협약에서 정의한 차별로 보지 아니하나, 그 결과 불평등한 또는 별도의 기준이 유지되어서는 결코 아니된다. 기회와 대우의 평등이라는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이러한 조치는 중지되어야 한다”라고 하여(제4조 1항) 특정성에 대한 잠정적인 특별유대조치를 성차별의 예외로 하고 있다. 이 잠정적 특별유대 조치는 전통적 성별 역할분업의 해소를 주요 목적으로 하여 기회의 평등뿐 아니라 결과의 평등까지도 지향하고 있다. 즉, 단지 남녀동일임금조약이나 직장차별에 관한 조약, 또 종래의 산전 산후휴가와 그 밖의 모성보호법규만으로는 여성노동자의 불이익을 해소할 수 없으며 결과의 평등을 위해서는 직장, 사회, 가정을 포함하는 새로운 사회체제를 창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의 평등사상을 표현하는 협약은 구체적으로 첫째, 남녀노동자 모두가 가족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노동조건을 만들어 내는 것이며 둘째, 무상으로 이제까지 사회적 책임을 수행해 온 노동자 가족의 사적 노동에 대해서 사회전체가 사회서비스나 사회시설, 공적부금 등으로 보상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 협약은 “당사국이 모성(maternity)을 보호할 목적으로 본 협약에 수록된 조치를 포함한 특별조치를 채택하는 것은 차별적인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여(제4조 2항) 모성보호도 여성차별에 대한 예외로 하고 있다. 그런데 협약은 모성보호를 남녀의 생물학적인 차이에서 비롯되는 여성의 임신, 출산 기능의 보호로 한정하고 있으며 자녀의 양육이나 근로조건에 대한 여성의 특별보호와 구별하고 있다. 협약은 후자에 대해서는 남녀공통의 보호로 하고 있다.

다섯째, 협약은 차별적인 법률이나 제도의 폐지를 통한 법률상의 평등뿐 아니라 사실상의 평등을 강하게 지향하고 있다. 사실상의 평등(de facto equality)은 법적 평등(de jure equality)에 대응한 개념이고, 기회의 평등에 대한 결과의 평등의 개념보다는 광의이다. 이것은 법적으로 뿐 아니라 사실상으로도 차별이 없는 상태, 즉 인적 구성에서의 수량적 균형만이 아니고, 남녀역할 분담의식이나 제도가 변형되어, 모든 영역에서 성(性)에 의한 정형화가 소멸되고, 개인이 성별로 파악됨이 없이 인간으로서 존중되고,

다양한 영역에서의 자기의 능력이나 의욕에 따라서 접근이 가능한 상태 및 그를 보장하는 제도가 완비되어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협약은 차별의 근원인 성별역할분업에 근거한 제도 및 관습, 관행, 의식의 개혁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즉, 협약은 법적 차원에서 형식적인 남녀평등의 보장만이 아니고, 국가는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해 사적영역에 까지 개입하고, 차별적인 관습이나 관행, 개인간에서의 성차별을 철폐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즉, 남녀평등을 실현함에 있어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남녀평등권을 차별로부터 소극적 배제에서 나아가 국가의 적극적인 시책의 전개에 의해서 실현하여 가는 것, 즉 사회권으로 위치 지우고 있다.

일곱째, 협약은 전문(前文)에서 남녀평등과 바람직한 사회질서나 국제질서의 실현이 상호밀접하게 관련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와같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문제와 사회구조와의 상호관련의 인식으로 인해 협약 전문은 여성차별의 철폐를 위해서는 빈곤의 상황에서 여성이 가장 혜택받기 어렵다는 것, 형평과 정의에 기초를 둔 신국제경제질서의 수립(The Establishment of a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이 필요하다는 것, 인종격리정책, 모든 형태의 인종주의, 인종차별, 식민주의, 신식민지주의, 외국의 침략 및 점령, 지배와 국내문제에 대한 간섭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 국제긴장의 완화 및 국가간의 상호협력, 완전한 군비축소 및 국가간의 상호협력, 완전한 군비축소 및 핵군축,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정의, 평등과 호혜, 국가의 주권의 존중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남녀평등의 문제를 세계사적 모순과 결부시켜 파악한 것이다. 한편으로는 개발도상국의 세계여성회의 참가가 전체 참가국의 2/3가 될 정도로 증대함에 따라 선진국과의 경제격차등 사회경제적 문제를 식민주의, 제국주의, 인종차별의 결과로 파악하고 선진제국의 책임을 묻는 것과 동시에 이러한 문제를 세계적 연대하에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남녀고용평등의 이념을 토대로 하여 협약은 모든 분야에서의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가맹국에게 입법, 행정, 사법 기타 조치를 통해 실현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이행상황을 유엔사무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의 심의와 권고를 받도록 하고 있다(제18조, 제21조). 한편, 협약은 고용과 사회보장분야에서의 남녀평등실현에 관하여 협약 제11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당사국은 고용분야에서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동일한 권리 특히 다음의 권리를 확보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가) 모든 인간의 불가양(不可讓)의 권리로서의 근로의 권리

- (나) 동일한 채용기준을 포함한 고용기회의 보장받을 권리
- (다) 직업과 고용의 자유로운 선택권, 승진, 직업안정 및 직무에 관련된 모든 혜택과 조건을 누릴 권리, 그리고 견습, 고등직업훈련 및 반복훈련을 포함한 직업훈련 및 재훈련을 받을 권리

- (라) 수당을 포함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 및 노동의 질의 평가에 있어 동등한 처우와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처우를 받을 권리
- (마)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 및 사회보장, 특히 퇴직, 실업, 질병, 병약, 노령 및 기타 노동무능력의 경우에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 (바) 건강보호에 대한 권리 및 생식기능의 보호조치를 포함한 노동조건 안전에 대한 권리

2. 당사국은 혼인 또는 모성을 이유로 한 여성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며 여성의 근로에 대한 유효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가) 임신 또는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및 혼인여부를 근거로 한 해고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것

- (나) 종전의 직업, 선임순위 또는 사회보장수당을 상실함이 없이 유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사회보장급부를 포함하는 출산휴가제를 도입하는 것

- (다) 특히 아동보육 시설망의 확립과 발전의 촉진을 통하여 부모가 직장에서의 책임 및 사회생활에의 참여를 가사의무와 병행시키는 데 도움이 될 필요한 사회보장혜택의 제공을 장려하는 것

- (라) 임신중인 여성에게 유해한 것이 증명된 유형의 작업에 여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

3. 본 조에 취급된 문제와 관련한 보호적 입법은 과학적 및 기술적 지식에 비추어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개정, 폐기 또는 확대되어야 한다.

이와같은 협약이 채택된 다음 해인 1980년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유엔 여성의 10년 중간 세계회의에서 협약의 서명식이 행해지고 58개국이 서명하였다. 협약은 제27조 1항의 규정에 의해 30번째의 나라가 체약국으로 된 1980년 9월3일 발효하였고, 1994년 현재 135개국이 비준하였다.

편집자주- 여성차별철폐조약 부분은 94년 한국여성개발원에서 발행된 『UN과 ILO의 여성관계 조약과 한국여성노동관계법의 비교연구--국내법의 입법과제와 정비방향의 제시』에서 그대로 옮긴 것이다.

판례를 통해서 본 국가보안법

조용환
변호사

1. 기본 논점

가. 위헌성

(1) 국보위 입법 - 대법원 판결과 현재 판결

헌법 111조, 부칙 5조, 헌법재판소법 부칙 3조 (이 법은 이법시행전에 생긴 사항에 관하여도 적용한다).

논점: 헌법이 정한 위헌심사는 법률의 내용만을 문제삼는 것인가 아니면 그 절차를 포함하여 모두 문제삼는 것인가.

5공헌법과 현행헌법의 관계 - 새로운 헌법의 제정인가 구헌법의 개정인가.

5공헌법의 폐지에 따라 국보위입법들이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볼 여지는 없는가.

현행헌법의 제정과정, 특히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5공청산과 그를 통하여 밝혀지고 있는 5공정권의 불법성, 내란정권성에 비추어 볼 때, 6공헌법의 해석과 적용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

국보위입법을 민주주의 원칙에 근거하여 정당화할 수 있는 논거의 문제 - 불법적인 폭력을 개념상 더 높은 단계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또 다른 폭력에 의하여 정당화할 수밖에 없는 논리의 빈곤 - 자기 상투를 잡고 높에서 빠져 나오려는 절망적인 시도

(2) 91년 개정절차의 위법, 위헌성

나. 북한에 대한 인식과 북한의 법적 지위

“우리 대한민국은 같은 동족이면서 인류역사상 가장 호전적이라는 북한 공산집단과 숨막히는 가열된 대치상태를 계속하고 있다. 그들은 1.12 제의를 비롯하여 거듭된 우리 정부당국의 민족적 인도적 제안을 외면하고 우리의 평화통일방안을 거부하고 기회있을 때마다 우리 정부를 비방하여 정부전복을 위한 대정부봉기를 선동하고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고 있음은 공지의 사

실이다.” 미문화원 방화사건 83.3.8. 82도3248

“북한 공산집단은 반국가단체로서 대남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이른바 인민민주주의혁명이론과 통일전선전술에 입각하여 우리 정부의 당국자회담제의를 무시하고 우리 정부당국을 배제한 채 사회단체들과만 회담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내부를 교란하여 적화통일의 목표를 달성하려 하고 있는 사실” 이부영 의원 사건

“북한은 6.25전쟁을 도발하여 남침을 감행하였고 휴전이후에도 대한민국에 대하여 도발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며, 그 헌법과 형법에 적화통일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을 뿐 아니라 막강한 군사력으로 대한민국과 대치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체제를 전복할 것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헌법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평화통일의 원칙을 선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한적인 남북교류를 규정하고 있다거나 우리 정부가 북한당국자의 명칭을 쓰면서 남북국회회담과 총리회담을 병행하고 정상회담을 도모하며 유엔가입을 추진하는 등 한다 하여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 할 수 없다. 91.4.23. 91도212 (박기영 사건 -일꾼노동연구원)

“북한은 현 군사분계선 이북의 대한민국영토를 강점하여 대한민국의 통치권의 행사를 방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하여 무력도발행위를 계속하고 선전선동으로 대한민국내부로부터의 붕괴를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으므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

인노련사건 (91.2.8. 90도 2607)

“헌법상 한반도에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치는 어떠한 국가단체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비록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주권국가로 존속하고 있고 우리 정부가 ...계 의하였다 하여 북한이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양승균 사건 90.9.25. 90도1451

논점: 국가인가 반국가단체인가

적국 또는 준적국론

반국가단체론의 근거: 헌법 영토조항의 타당성과 그 해석문제

사실의 허구와 법률의 허구에 의존

2. 개별 조항들

가.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

반국가단체 구성죄가 성립하려면 정부를 전복하기 위하여 집단을 구성하면 되고 반드시 공산정권을 수립하거나 또는 군주국가 등으로 국체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이 있어야 하므로 폭력적 수단으로 정부를 전복할 것을 기도하고 또 정부전복후의 새로이 수립할 정부를 구체적으로 구상함을 요한다고 할 것이나 공산주의자 또는 북

한괴뢰집단에 동조하는 자가 반국가단체를 구성하였다면 경험상 정부전복후에는 구체적으로 북괴와 같은 정부를 수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들에 대하여는 새삼스럽게 그 목적의 유무를 따질 필요가 없다. 83.2.8. 82도2672

구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항에 정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2인 이상의 특정다수인의 임의적인 계속적 또는 일시적 결합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개정된 국가보안법에서 반국가단체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 자민통 사건 92.1.21. 91도 2671

국보2조의 반국가단체로서의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라 함은 2인 이상의 특정 다수인 사이에 단체의 내부질서를 유지하고 그 단체를 주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위계 및 분담 등의 체계를 갖춘 결합체를 말한다. ...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 모두 그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한 것에 귀결되나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의 구별은 각 단체가 그 활동을 통하여 직접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체가 정부참칭이나 국가의 변란 자체를 직접적이고도 1차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을 때에는 반국가단체가 되고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는 등 방법으로 동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적단체가 된다. 안재구 사건 95.7.28. 95도 1121

나. 지령, 지령을 받은 자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라고 함은 반국가단체 또는 그 구성원으로부터 직접 지령을 받는 경우뿐 아니라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다시 지령을 받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이고 그 지령은 지시와 명령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반드시 상명하복의 지배관계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그 지령의 형식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 서경원 사건, 문목사사건

북한으로부터 초청장이 대한적십자사를 통하여 전대협으로 전달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본래 북한이 전대협을 초청한 취지는 공식적인 초청과 관계없이 전대협대표자를 밀입북시켜서라도 평양축전에 참가하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지령을 받고 탈출 잠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임수경 사건 90.9.25. 90도 1613

지령을 받은 자의 판단 문제

다. 회합

피고인들이 실제 북한과의 범민족단합대회 추진을 위한 예비회담을 하기 위하여 판문점을 향하여 출발하려 하였다면... 당국의 제지가 없었더라면 위 회담이 반드시 불가능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이므로 ... 회합에비죄에 해당한다. 범민족대회 사건

라. 통신·연락

국보 8조의 통신연락은 “그것이 은밀하게 행하여졌는지 공개적 또는 공식적으로 행하여졌는지를 묻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국내의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공개적 공식적으로 통신연락을 하였기 때문에 오직 은밀하게 통신 연락하는 것만을 요건으로 삼고 있는 위 규정 소정의 통신연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부영의원 사건

마. 간첩, 국가기밀 누설

구 국가보안법 소정의 국가기밀이라고 함은 순전한 의미에서의 국가기밀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방면에 관한 국가의 모든 기밀사항이 포함되며 그것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에게는 유리한 자료가 되고 우리나라에게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면 국가기밀에 속한다. 91.12.24. 91도 2495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사상 등 각 분야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국방정책상 북한 공산집단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이익이 되는 모든 정보자료를 말하고 이러한 기밀에 속하는 이상 이미 국내에서 잘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북한공산집단에게 유리한 자료가 될 경우에는 이를 탐지 수집하는 행위는 간첩죄를 구성한다. 서경원 사건 90.8.24. 90도1285

“국가보안법에 이른바 국가기밀이라 함은 군사상 기밀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상은 물론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각 방면에 관한 국가적 기밀까지 포함하여 **확대해석함이** 상당하다.” 71.9.28. 71도 1220; 64. 9.22 64도290

예: (1) 간첩으로 내려 온 아버지에게 피고인이 “남한에서는 쌀값은 시시로 변하고 농촌에서도 돈만 있으면 물건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돈 있는 사람은 잘 살고 돈 없는 사람은 못산다”고 한 것은 자유경제체제를 취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자명하고도 당연한 경제질서의 기본원칙을 말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도 이것이 북괴를 위하여 유리한 것이 되고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 되지 못할 때에는 ...죄가 된다. 67.8.29. 67도 918

(2) 일본에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영해룡으로부터 간첩지령을 받고 입국잠입한 피고인이 제주공항에서 입국절차를 밟을 당시 출입국검사관의 책상위에 있는 이견 수배자명단이 우연히 눈에 띈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수배자명단을 유심히 살핀 결과 ...위 영해룡 등이 수배된 사실을 알아냈다면 이는 국가기밀사항을 탐지한 행위이다. 78.1.10. 77도 3571

바. 잠입탈출

잠입탈출죄는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지 아니한 지역으로부터 잠입한 경우나 탈출한 경우에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의 의사아래 잠입 탈출한 경우라면 이에 해당한다. 91.12.24. 91도 2495

사. 찬양고무동조

이적목적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이익이 될 수 있는 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복사 또는 소지함을 말하고 반드시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함을 요구하지 않는다. ... 헌법에 의한 학문의 자유는 순수하게 진리탐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인 유인물들을 복사 또는 소지하였다면 학문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것이다. 90.7.24. 89도 251

이적표현물이 되기 위하여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도 공격적인 표현물이어야 한다. 95.7.28. 95도 1121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전원부 판결

아. 이적단체

이적단체의 구성은 "그 구성원들이 그들의 하고자 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말하고 이 경우에 그 구성원들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박기영 범민련사건 90.8.28. 90도 1217

자. 불고지

불고지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본법의 행위가 동법 ...의 죄를 범한 행위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고도 이를 수사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한다. 72.2.22. 71도2247

아.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합의서 - 현재결정

3. 국제법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하여 설치된 인권이사회에서 소론과 같이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국가보안법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 한청련 박태훈 사건 93.12.24. 93도 1711

국가보안법 판결에 나타나는 특징

1. 민주주의 국가의 법률로서 본질적인 징표인 정당한 절차에 대한 관념이 없다. - 5공 입법회의 입법을 형식문언으로 정당화, 6공 날치기 입법문제 무시. 현행헌법에서 위헌법률의 요건으로 명시한 내용중 절차문제를 배제해 버리고 있다.

2. 북한에 대한 인식문제 - 사실적 근거와 법률적 논거가 모두 없는, 허구적인 헌법의 영토조항을 형식논리만으로 적용하여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판단. 판단내용이 법률적인 틀을 넘어 대단히 주관적이고 정치적이다.

3. 남북합의서의 효력문제 - 의도적으로 판단하지 않음. 단순히 그것으로 인하여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식의 회피성 논리로 일관.

4. 남북교류협력법과 관계 - 현재: 국보의 잠입탈출, 남북교류법의 왕래가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판단되고 있는데도 그 실질을 도외시한 채 단어 자체의 차이만을 근거로 판단 거부.

법원: "정당한 이유"의 개념을 밝혀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무조건 정당화.

5. 국제인권규약과 관계 - 판단회피

6. 각 조항의 판결들

가.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왕래, 금품수수, 통신회합, 편의제공, 표현행위 등 대부분 그 자체로서는 불법일 수 없는 행위유형을 범죄로 정하고 있는 국보의 조항들이 정당화되려면, 그 행위들이 특별한 조건을 통하여 국가안전에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 그러나 국보는 "반국가단체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라는 관련외에는 아무 것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불법요건을 충족하려면, 단순히 반국가단체와 관련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관련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국가안전이 위협받는다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판례는 이를 명확히 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혹은 판례는 국가보안법의 막연한 규정들을 더욱 확대해석하여, 국가안전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행위에 까지 적용범위를 무한정 넓히고 있다. 예컨대, 적십자사가 통일원의 승인을 받아 전대협에 전해 준 초청장이 지령이 되는 이유, 신문보도를 통하여 북한과 통신했다는 범죄사실, 금품의 액수와 그 수수목적은 묻지 않고 범죄가 된다는 판결, 이적표현물에 대한 판례 등은 사실상 아무런 범죄구성요건없이 처벌하는 것에 불과하다.

나. 국가기밀 누설 (간첩)과 같이 법문상 불법유형으로 정형화할 수 있는 구성요건도 무분별

한 확대해석에 의하여 사실상 아무런 구성요건이 없는 것과 같이 되어 있다. 예컨대, 공지의 사실도 국가기밀이라는 판결을, 그 논리 자체로 자기모순이며 논리의 기본법칙인 모순율에 저촉된다. 이는 구성요건이 없는 것과 같다. - 확대해석을 스스로 인정

다. 반국가단체 - 실질적으로 국가안전을 해할 수 있는 개연성,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 구성원이 그 단체에 참가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관계없이 단체에 가입한 사실 자체만으로 처벌하고 있다. 특히 북한에 동조하는 사람들의 단체는 목적을 따질 것 없이 무조건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하는 조항은, 북한에 동조하는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로 말미암아 결사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적단체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라. 광범위한 추정과 자의적인 "객관적 판단"

행위에 객관적으로 이적성이 있으면, 그것을 인식했다고 추정, 인식이 있으면 목적을 추정. 그러므로 결국 객관적으로 이적성이 있는 행위를 하면, 스스로 고의와 목적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유죄가 된다. 여기서 객관적으로 이적성이 있다는 판단은 극히 자의적이며 국가권력의 주관적 평가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결국 범죄인 행위와 범죄가 되지 않는 행위를 가릴 객관적인 지표는 제시되는 것이 없고, 그 행위자의 내심의 의사가 문제된다. - 심정형법

* 편집자주 - 강사가 제시한 대표적 판례, 관련자료 등은 분량(170여 쪽)이 많아 같이 실지 못하고 별도의 자료집으로 묶음.

변화하는 세계질서와 한국 그리고 나

오재식
사회교육원 원장

여러분 제가 쓴 글 '국제화와 인권'(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3호)을 읽은 것을 전제로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세계가 어떻게 변하느냐는 얘기가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세계의 변화를 3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냉전체제 이후의 변화의 하나는 근본주의의 대두, 둘째 시장논리의 확장, 셋째 민족주의·종족주의의 새로운 차원 또는 대두입니다. 그 3가지를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본주의의 대두

근본주의 하면 우선 이슬람의 회교도를 생각하는데 이슬람 근본주의를 자주 신문에 서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은 기독교 제국주의에 대한 반항입니다. 그것을 깊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근세 3백년 동안 서구라파 세력을 뒷받침한 정신적인 지주이고 자본주의를 도덕적으로 지원·축복해 왔습니다. 때문에 소위 근대화 과정에서 저지른 모든 죄의 근원이 기독교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상체계 또는 종교적인 구조는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못됩니다. 따라서 기독교라는 진리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원용·남용하는 서구라파 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종교적인 근원에서 찾았습니다. 중동 이슬람의 강경파, 이슬람교의 우위파 사람들의 입장은 '기독교의 메시아주의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내걸은 이른바 인류사회를 빈곤에서 구제할 것이라는, 2차대 전 이후의 세계관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질서를 어디에다 세울 것이냐는 것을 고민하면서 젊은 과격한 사람들은 테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테러집단이라고 규정하기 전에 그 배후에 훨씬 더 깊은 서양문화에 대한 도전이 있습니다. '어떻게 서양문명이 세계를 대변할 수 있느냐'는 회의 등이 깊게 깔려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슬람 근본주의에 대해서 논문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본주의가 왜 나오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기독교 근본주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지난번의 선거결과 분석에 의하면 미국을 지난번 선거에서 공화당으로 뒤집은 것이 기독교 우익집단들의 선동이 굉장히 많이 작용했다고 합니다. 만약 차기 미국대통령을 공화당이 내면 미국의 대외정책은 굉장히 오른 쪽으로 돌아가고 근본주의적인 기독교의 이익집단이 그 배후에 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는 이슬람과 미국의 대결국면으로 갈 것입니다.

민족주의 · 종족주의 문제

둘째로 이 민족 · 종족주의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민족주의를 넘어서 세계주의로 가자, 국제화 해야 되지 않느냐'는 한쪽의 움직임이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세계주의라고 하는 것이 지방, 지역, 나라 등에 기초하는 것이니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민족이라는 주장입니다. 민족주의가 냉전 이후 크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구라파를 동구라파 중구라파 서구라파로 나누는데 중구라파는 유고슬라비아에서부터 쪽 올라가는 대륙이고 동구라파는 산맥 이쪽에 사는 동쪽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구라파 동구라파는 사회주의권이 해체가 되어 해방되고 난 뒤에 '나라건설을 하는데 무엇을 할 것이냐'고 하다 보니까 사회주의가 가지고 있던 세계주의, 즉 세계 만민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세계주의에서 이탈하고 나니까 나라를 세우는데 무엇을 가지고 세우느냐는 것이 문제로 남습니다. 결국 민족의 정체성 즉 우리 민족은 본디 이랬다는 과거형, 복고형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민족주의는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개방적인 민족주의가 아니라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그 집념 때문에 복고주의적인 양태를 갖기 시작합니다. 세계주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반동적인 데로도 말려 들어가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동구라파, 중구라파만이 아니고 여타의 지역에도 상당히 많이 파급이 되었습니다.

가령 아프리카를 보게 되면 상당히 극적으로 나타납니다. 아프리카대륙은 종족 · 부족(자연부족)이 1만여 이상된다는데 그 부족들은 서구라파 세력들에 의해 침탈 당했습니다. 침략하고 식민경영을 하다 보니까 서로 식민국가간에 충돌하니까 금을 그어서, 여기까지가 내 땅이고 여기부터는 내 땅이라는 식으로 국민국가형태로 나가게 되어 지금의 대륙모양이 그려졌습니다. 아프리카를 공부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19세기말엽 25년 동안에 아프리카 1만여의 부족사회를 24개 국민국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국경이 위도, 경도를 따라서 직선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연부락이 아니지요. 열강들이 인위적으로 분할해서 통치한 역사가 아프리카입니다.

지금 와서 그 경계선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프리카의 부족주의가 민족주의로 연결되고, 국경이 그어진 위도 · 경도를 다시 자연 부락으로 바꾸자는 움직임이 아주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르완다 사태는 그 하나입니다. 부족간의 경쟁이나 싸움 등이 서구라파의 제국주의가 통치할 때는 군사적인 위협 때문에 꿈쩍 못하고 있었는데, 통치가 없어지고 나니까 '무엇으로 정체성을 확립하느냐, 우리는 본디 이랬다'는 과거 지향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수민족들의 문제, 예를 들어 터키와 주변에 있는 커드족의 문제에도 상당히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지만 같은 동족입니다. 말도 같고, 풍속도 같고, 조상도 같고 때문에 커드족은 국적이 달라도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려고 상당히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독립국가를 세울 땅이 없습니다. 다 남의 땅이지요. 자꾸 그런 문제가 생겨서 커드족과 이라크간에 충돌이 생기게 됩니다. 이 문제를 잘 나타내는 논문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역사학자 베레딕트 앤더슨의 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미국의 소장학자인데 그가 쓴 많은 책 가운데 『상상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책을 쓰기 위해서 그는 인도네시아로 가서 공부를 했고, 인도네시아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책을 썼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화란의 식민통치를 받은지 몇 백년이 되었는데 그 나라는 수많은 부족과 수천 개의 섬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적어도 화란은 아니다 라는 상상(Imagination)이 있었습니다. 반사적인 Imagination을 스카르노가 기가 막히게 응용했습니다. 그 많은 섬들을 하나의 국가로 만든 것, 이것이 Imagination입니다. '이것은 아닌데, 이것은 우리가 아닌데'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각각의 생각을 하나의 독립국가로 형성하는 정치적인 카리스마 그것 역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화란과 대항해 싸웠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카리스마적 힘때문에 뭉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장경제의 논리해 대항하는 원거리 민족주의(distant nationalism)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거리 민족주의(distant nationalism), 예를 들면 상당히 먼 거리에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LA 한국사회 안에서 민족주의(nationalism)가 강하게 일어난 것은 거리가 문제가 안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아리랑을 부르고, 명절을 지키고, 추석때 송편을 빚고 하는 정신은 바로 거리를 초월해서 nationalism이 서로 연대가 되는 것의 반증입니다.

이런 통찰은 앞으로 새로운 세계질서가 무엇이나? 어떤 질서 위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인간의 권리를 이야기하느냐 하고 할 때 상당히 중요한 포석이 됩니다. 그래

서 imagined community, distant nationalism 등 이런 것들이 이제부터 이야기하려고 하는 시장경제 논리를 대항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한사람이 인도의 꼬따리(Khotari)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국민국가라고 하는 큰 실체가 몇 백년 동안 서구라파를 통해 계속 살아 국가의 개념과 시장의 개념이 세계 모든 인구를 표준화시켜 왔습니다. 한 국가 국민의 의무는 이런 것이라 하고 헌법으로 정하고 그 틀 안에 사람들을 집어넣고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틀 안에 우격다짐으로 교육을 통해 집어넣어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후천적인, 훈련을 통해 만들려니까 표준형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간이기 이전에 국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시장은 주고받고 거래하는 곳입니다. 마진을 얼마를 붙여야 하느냐,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는 상품이 어떠한 때 해야 한다는 시장의 표준형이 생깁니다. 올림픽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속도 조정도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100미터를 뛸 때 얼마에 뛰어야 하는가는 것이 표준가치가 됩니다. 기차는 얼마큼 달려야 하는가, 따라서 인간의 생산 능력은 어떠한 때 해야 하는가는 문제로까지 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표준형입니다. 그 표준에 들어가지 않는 모든 예외 규정은 전부 잘라도 상관없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한 강력한 근대화 과정에 시장·정부·국가가 가지고 있는 표준형을 뚫을 수 있는 길은 '종족주의'라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한 원거리 민족주의, "우리가 본래 하나였다"는 종족주의, 이것이 개방적이기만 하면 그 표준화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꼬따리 교수가 통찰했습니다. 거기에는 '개방적이기만 하면'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경제, 세계화를 외치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그 표준화 과정에서 인간이 얼마나 잘리고, 부대끼니까. 내가 다리가 짧으면 길게 만들고 길면 짧게 만들면서 표준형이 되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그 개념이 개념화되어 우리의 사고방식이 '사람은 이래야 된다'는 식으로 되어 버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면 낙오자가 되거나 전부다 범법자가 되거나 합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까지, 냉전체제가 끝날 때까지 그래왔는데 그 가상적인 구조물이 붕괴가 되고 나니까 여러 가지로 '백화만방'이 되는 겁니다.

2차 대전 후에도 그랬지만 세계주의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를 중심으로한 서구라파 세력의 자기투사인데) 조그마한 로마제국에서부터 이야기하면 점점 지역적으로 확장되어 갑니다. 군사적인 지배권이 확장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라 논리도 점점 확장되어 가고 그 선상에 세계주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세계주의(팍스아메리카까지 포함해서)가 냉전체제 붕괴와 더불어 끝이 왔습니다. 이른바 기독교적인 메시아주의가 끝이 왔다는 겁니다.

국제주의에 도전하는 국익론

이 글은 문화일보의 12월 21일자에 실린 내용입니다. '국제주의에 도전한 국익론'이라고 워싱턴 특파원이 쓴 것입니다. 공화당 후보들의 하나같은 이야기가 미국의 대외정책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로주의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것인데, 우리 살기도 바쁘는데 왜 세계를 모두 껴안으려고 애쓰느냐는 것입니다. 즉 국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냉전 체제 때는 한반도가 공산화 안되는 것이 국가의 이익이라고 강변했지만 지금은 소련의 도전이 없는데 한반도를 지켜야 하냐, 국익과 아무 상관없고 오히려 경제손해라는 국익론이 나옵니다. 세계주의를 내세워 봐야 안되지고 다시 만로주의로 돌아가자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논문에도 썼습니다만 OECD 국가간에도 이미 무한 경쟁시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타의 나라들 즉 "후진국가들은 어떻게 하느냐, 누가 돌보느냐"는 문제가 있는 것은 알지만 지금 우리가 "왜 그것까지 신경 쓰느냐"는 것이 일반적인 자세입니다. 세계주의, 국제주의의 허구성을 잘 알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되풀이해서 표준형을 문화사적으로 보면 표준형이라는 말은 가장 기본이 싸우는 사람, 무사를 말합니다. 한 집안에서 수렴을 잘해 양식을 확보하는 사람에서부터, 힘이 있어 가상의 적과 싸워 가족을 보호하고, 타부족에게 이겨 부족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키고 하는 '무사' 중심입니다. 따라서 전투능력이 없는 사람은 제외되었습니다. 자연히 전사, 무사의 문화가 세계 줄기의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가령 서구라파의 민주화 과정을 보아도 맨 처음 투표권은 무사들에게 있다가 차차 상인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투표권을 사 겨우 받을 불이게 됩니다. 귀족사회가 생기고 소시민이 생기고, 점점 투표권이 확장되어 갑니다. 바로 그 중심표준 사상이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여성 투표권이 생긴 것은 최근의 일이고, 10여년전까지만 해도 스위스의 어느 지방에서는 여성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투표권 자체를 제한하는 나라들이 서구라파에 있었습니다. 사고의 중심에는 표준형을 중심으로 여타의 것을 처리를 하면 된다고 여겨 온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자의 문제, 소수 민족의 문제, 원주민의 문제 등이 점점 확장되어 갑니다.

원주민 문제도 지금 뉴질랜드에서 좋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만, 백인들이 뉴질랜드, 호주를 점령한 것은 2백20년 안팎의 일입니다. 뉴질랜드는 쿠크 선장을 위시한 구라파 항해사들이 신대륙 발견이라고 깃발을 꽂고 개척한 나라아닙니까. 그때까지는 본토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들을 모두 총칼로 제압하고 백인들의 표준을 세웠습니다. 비록 숫자는 원주민이 많지만 백인들의 표준에 맞지 않으니까 백인들이 보기에는 본토 사람이 변방 사람들인 것입니다. 본토사람들을 특정 지역에 가두어 놓고 나머지는 모두

다 점령을 하는 그런 역사였는데 2백년이 지나 새로운 세계사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것이 창피하다는 겁니다. 창피할 뿐만 아니라 본래 본토민들의 주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너희들이 2백년 역사를 가졌지만 우리는 몇 만년을 살아왔다, 총칼로 만들어 놓은 와이팅기조약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와이팅기에서 마우리족 추장을 데려와 서명까지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조약은 우리나라의 한일합방과 마찬가지로 총칼에 의해 한 것입니다. 강요된 조약이니까 무효다라고 마우리족들이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전통의 역사, 확장의 역사의 중심에서 보면 그들은 다 찌꺼기 인간들인데 이젠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표준화에 맞서 나타난 상이권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 장애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와 성능·기능·역할이 같지 않은, 등급이 떨어진 장애자가 있습니다. 장애자의 인권의 문제를 얘기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입니다. UN이 장애자의 인권선언을 한 것이 20년 전입니다. 75년 12월9일 장애자 인권선언을 했으니까 금년이 꼭 20년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들어 겨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등이 생겨 장애인보호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중심이 잘살면 장애자도 여타의 종족이니까 보호해 준다는 생각이 장애자가 본래 권리가 있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중심에서 시작하는 이 사고를 변방운동이 도전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본래 패러다임이 잘못되었다. 어떻게 메시아주의가 가능할 수 있느냐'는 이것은 인권운동의 기본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서구라파 운명에 대한 도전과 도식이 같습니다.

이렇게 자꾸 확장되어 모든 피조물들, 인간이건 동물이건 기본 생물의 존귀와 존엄은 같다는 생각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기독교에 성서가 쓰여진 당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중심부가 조금씩 와해되고 양보하는 것을 통해서만 이루어졌지, 변방의 힘으로 중심부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아직도 그 중심부는 엄연히 살아 있고, 우리 생각이 점차 바뀌어 갈 뿐이지 이 생각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습니다.

제가 장애인운동하는 사람인 어느 의사를 만났는데, 그는 "뇌성마비 환자들의 문제는 하나도 우리와 틀릴 것이 없다. 컴퓨터로 얘기한다면 코드와 코드 사이의 접속 속도가 느린 것뿐이다. IQ가 낮다고 하는 것은 접속 속도가 느린 것뿐이다"는 말을 했습니다.. 딴 사람처럼 빠르지 않고 조금 더디게 가는 것입니다. 속도의 문제이지, 기본 기능의 차이는 아닙니다.

속도는 표준을 가지고 볼 때 100미터를 몇 초에 뛰어야 하는 가라는 것을 말합니다. IQ가 150은 되어야 정상이 아니냐는, 즉 속도의 표준화를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등차

가 생기는 것입니다. 등차를 매겨서 너는 우월하다, 너는 열등하다는 사고방식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역사와 같이 갑니다만 가령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보고 인간이라고 선언할 때 그것은 인간으로 살 때는 인간으로서 살 권리가 있어야겠다는 겁니다.

인간으로 살 권리, 즉 생존권뿐만 아니라, 내가 살 수 있는, 내 생활 수단을 벌 수 있는 개발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발권이 있으면 국가는 그 개발권을 존중할 의무를 갖습니다. 모든 사람이 생존에 필요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social minimum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거창한 이야기입니다.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재력으로서는 도저히 개발권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결국 세계적인 연대를 하지 않으면 안되게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나온 사상 가운데 하나는 상이권입니다. '내가 너와 다를 수 있는 권리',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1980년대 불란서의 학자가 처음으로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내가 왜 너랑 같아야 되느냐는 독자권 내지는 상이권은 이런 것입니다. 소수민족, 가령 일본에 있는 재일 교포들(조선족)은 역사적인 원인 때문에 그곳에서 살고 있는데 왜 일본인과 같아야 하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일본성을 가져야 하고, 일본말을 쓰고, 일본 기모노를 입어야 하고 일본음식을 먹어야 하느냐는 반문입니다. 김치를 먹고 싶다는 그 독자권 내지, 일본 사람과 다를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소수 민족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이권의 사상은 표준화에 대한 도전입니다. 한 국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사가 있어야 하고 국민교육, 국민경제가 있어야 하는데 과연 국가 체제가 얼마만큼 각자의 상이권을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관용의 문제는 앞으로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 될 것입니다.

난민, 이주노동자의 문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난민문제입니다.

세계 난민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공식 통계가 3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비공식으로 하면 배는 될 것입니다. 난민을 적게 잡아 5천만 명이라고 칩시다. 난민은 자기 고장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또는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에 가 있는 사람, 자기 의사와 달리 상황 때문에 쫓겨가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전쟁, 자연재해, 정치적인 탄압의 난민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기 의사와는 달리 떠나 있습니다. 이 숫자가 1천만 명이 넘어가면 국내법으로 다스릴 수가 없게 됩니다. 어떤 법체계가 1천만 명에게 거주권을 줘야 합니다. 말도 안되지요.

또하나는 이주 노동자들의 문제입니다. 지금 파악된 숫자가 3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파악 안된 수가 많을 테니까 아무리 낮게 잡아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은 됩니다. 우리 나라에도 공식 등록된 사람은 8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배는 넘어간다고 하지요. 불법체류등으로 라벨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둘을 합치면 1억이 넘습니다. 1억이 넘는 인구가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산업적 이유, 경제적 이유, 정치적 이유 또는 자연재해의 이유 때문에 1억이 넘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제 대상일 뿐만 아니라 정부의 표준화, 법제의 표준화, 경제의 자생 능력까지도 도전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령 북한이 잘못되어서 2천만명 가운데 5백만 명의 난민이 생겨(중국이 강을 완전히 봉쇄해) 남쪽으로 넘어온다면 5백만 명의 난민을 남한 경제가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그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8%, 9% 씩 경제 성장을 합시다만 1-2% 또는 마이너스성장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그때 오는 일반적인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느냐 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전부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잃고 싶지 않고, 지금 살고 있는 표준을 내려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난민을 보호하자, 인권을 보호하자, 저 사람도 인간이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난민의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새로운 냉전체제의 현상입니다.

냉전체제 때는 양진영이 경쟁을 했습니다. 난민을 어떻게든 블록 안에서 해소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비판하니까 감싸안으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련한 UN 난민 위원회로 전부 몰려갑니다. 이것은 국내법, 국내 문제만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지금은 그 사람들이 구제 대상입니다만, 그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가서든지 자리를 잡고 정착을 하면 각각의 민족의 근거지가 됩니다. 우리 민족이 중국 북부에 갔을 때도 난민이었습니다. 한때는 3백만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거기에 김치가 생기고, 치마저고리, 추석이 오게 됩니다. 그것이 nationalism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distant nationalism이 난민 5천만 명을 통해서 사방에 흩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세계가 예측하지 못했던 요인들 때문에 세계사가 바뀔 조짐들이 생겨 가고 있습니다. 그 씨가 사방에 뿌려져 가고 있습니다.

사라예보는 보스니아의 수도인데 세계 제1차 대전이 시작된 곳이 바로 보스니아입니다. 사라예보는 1984년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아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인구가 34만 명밖에 안됩니다. 그 가운데 11만 명이 난민이니까, 1/3이죠. 이번 전쟁으로 확인된 숫자만으로도 2만 명이 죽었고 6만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고통의 깊이를 알 수 있겠지요.

서구라파 세력이 왜 유고슬라비아 내전을 해결하지 못하고 왜 3년동안 방치했느냐는

것은 탈냉전 후 질서구조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어떻게 변했느냐는 이야기를 하지만 유고슬로비아 문제는 궁극적으로 탈냉전후 제각각 국가이익주의, 자국주의로 돌아갔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거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한 명이라도 내 나라 병사를 죽이고 싶지 않다는 국가 이익주의가 서로 앞서 있었습니다. 자기네 나라 병사를 파병한 나라들도 남의 나라 사령관 밑에 두질 않았고 다 각각의 사령관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독립군대로서 연합군대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나토가 개입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고, 그것도 지상군보다는 공군력으로 폭격한 것에 그쳤습니다. 그런 식으로 옛질서가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사회주의권만 망한 것이 아니고 자유주의권도 그 기능이 마비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보스니아 전쟁을 해결하지 못한 데에서 극적으로 나타납니다. 자국주의, 자국이익을 우선 지키는 한도에서 개입을 하려 했습니다. 자유고 인권이고 나발이고 아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을 위해 싸우는 사라예보의 슈바이처

이것은 조선일보 12월 21일자 기사입니다. 48세인 사라예보 의과대학 교수는 유대인인데 회교도의 부인을 두었습니다. 결혼해서 같이 살면 회교도냐 아니면 다른 종교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으로 사랑하고 사는 것이지 회교도라는 것은 후천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교수는 '내 부인의 종족인 회교도를 도와야겠다'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으로 의약품 지원을 했습니다. 보스니아에 지원된 의약품의 절반 이상이 그 사람을 통해서 갔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50%입니다. 이는 기가 막힌 활동입니다. 사라예보의 슈바이처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 교수는 애를 썼는데, 그는 세계 유대인들이 지원하는 유대인 단체 베네돌렌치아를 만들고 세계 각국의 유대인들한테 돈을 거두어 그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생각은 자기들이 2차대전 때 그렇게 억울하게 당했는데 자기네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자는 인도주의가 앞서갔던 것입니다. 희생자의 역사적인 역할이 반드시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사의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인이 회교도인 가운 박사는 ‘유대인이 회교도를 돕고 회교도가 세르비아인 들을 돕는데, 세르비아인 들은 회교도를 계속 폭격하고 죽였다. 회교도가 세르비아인 들을 돕는 것은 사라예보밖에 없다. 내전 이후에도 사라예보에는 그같은 전통을 유지해 갈 것이다’고 말했다.

지금 평화 협상이 되어서 겨우 이제 총쏘는 것은 멈추었지만 휴전 상태이면 문제는 회교도와 세르비아인이 같이 살 수 있느냐, 크로아치아인이 같이 살 수 있느냐, 또 기독교 계통의 사람이 같이 살 수 있느냐 하는 갈등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나.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존엄을 위해서 싸운 사람이 신화로 남을 것이라는 이런 영감이 없이는 한 community가 지탱이 안됩니다. 이것이 결혼을 통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상당히 시사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야기 '얼굴없는 인권침해자'

이제 한국 이야기를 합시다.

김수환 추기경이 최근 관훈클럽에 가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역사 청산이라고 해서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넣었다고 하는 것은 민족사적인 과제다. 그것을 잘 처리하면 우리는 명예혁명의 후예가 되고 일등 국민이 된다. 이것이 영망이 되면 우리는 또다시 구렁텅이 속에 빠진다. 그런데 왜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정당끼리 싸우고 서로 시샘을 하고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하느냐.”

그런데 오늘 아침 외신에 금년도 10대뉴스 중 3번째가 우리나라 전두환, 노태우 감옥에 넣은 것입니다. 세계 10대 뉴스의 3번째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역사를 청산할 수 있는, 역사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능률적인 국민이나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해방 후에 못했고 박정희 죽은 다음에 못했고, 4.19때 못했고 계속 밀려와서 이제 겨우 기회를 잡았는데, 이것이 또 명년의 선거 정치와 연결이 되어서 중간에 유아무야되고 “아, 좋다 내줄 테니까 지시한 대로해라” 이런 식으로 흥정이 생기고 이러면 또 안되는 겁니다. 역사를 바로 잡는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근대화 과정에서 희생당한 사람들, 산업화·근대화라는 이름으로 희생시킨 사람들, 고문해서 죽은 사람, 자살해서 죽은 사람, 견디다 못해서 투신한 사람들, 삼풍 백화점에서 희생당한 사람들, 성수대교에서 무너진 사람들, 대구 가스폭발사고로 무너진 사람들... 70년대는 가해자가 얼굴이 있었습니다. 아직 찾지 못한 몇 사람의 가해자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누가 누구누구를 가해한 겁니다. 그러나 근대화 과정의 전성기인 지금은 가해자의 얼굴이 없습니다. 성수대교? 건설업자가 있지만 법으로 처벌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삼풍?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만 사형도 못시킵니다. 가해자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가스가 터졌는데도 최선을 다했는데 폭발한 걸 어떻게 합니까고 대답합니다. 길거리에 가다가 무엇이 떨어지면 아, 그거 바람이 세서 날아왔습니다. 가

해자의 얼굴이 없는 것입니다. 희생당한 사람은 누구에게 호소하느냐, 삼풍도 국가배상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책임의 소재가 분명치 않은 가해 행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청리하느냐. 어떻게 책임사회로 만드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령 장애자 운동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도 자기들이 인간선언을 하려고 해도 한발도 내딛고 집밖을 나갈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사회 전체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아닙니까. UN이 20년전에 장애자 선언을 할 때 기본이 무엇인가 하면 장애 대부분이 사회적이고 억압적인 것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장애자를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 지금 교통사고로 생긴 장애자가 훨씬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얼굴이 없는 가해자들이 생기는 인권침해를 누가 보상을 하고 누가 책임을 지느냐 하는 사회적인 책임의 문제가 아주 애매해지고 아직도 극소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인 책임을 확정시켜야 된다, 피해자를 보상하고 보호할 수 있는 국가의 사회의무, 이것이 나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까지 밀고 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박정희가 근대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며 우선하는 얘기가 민족중흥이라고 그랬어요. 민족중흥의 대과업을 내걸었어요. 어떻게 근대화라는 것이 나라의 목표가 되느냐 이것은 수단이야지, 경제개발이라는 것이 어떻게 민족의 목표가 되느냐는 질문을 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밀려서 몇 십 년동안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대로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황홀해 졌는데, 이제 와서 감옥에다 넣어 놓고 잘못되었다 하고 재판을 하려고 하니까 어디까지 재판을 해야 하느냐, 어디까지 고쳐야 하느냐. 어디까지 소급해야 하느냐 앞으로 무엇이 달라져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정부 스스로 못푸는 것입니다.

꿈꾸는 사람이 필요

시민 단체에서 이것을 제시해야 합니다. 종교단체들이 꿈을 꺾어야 합니다. 김수환추기경이 관훈클럽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당신이나 나나 그 사람들 그럴 때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도 반성을 해야 합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뼈아픈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활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이 행복인지 얘기하지 않으면 나라가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가 2대가 있으면 1대 있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고, 자기 집이 있으면 더 행복하고, 집평수가 크면 더 행복하고 이런 수량적인 수치로만 우리는 결부시키고, 길들여져 왔는데 행복이 뭐냐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질문을 다시 하자, 그래서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문화일보 21일자 김금자씨가 '95년의 가르침'이란 글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사는 태도부터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활의 기본적인 가치가 무엇일까라는 이야기를 쓰다가 내가 5천불만 있으면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왜 더 이상 돈이 필요한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썼어요.

“어느 옛글에 이런 글이 나온다. 천하게 보이는 것은 앉아 있는 주변의 여러 가지 도구들이 준비하게 놓여있는것 하나, 붓통 속에 붓이 많이 꽂혀 있는 것 둘, 불당에 부처님이 너무 많이 앉아 있는 것 셋, 앞뜰에 돌이나 초목이 지나치게 많은 것 넷, 불공드릴 때 좋은 공덕을 많이 늘어놓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천한 것이다.”

지금 우리 기독교처럼 타락한 종교도 없습니다. 상업주의·확장주의·물량주의·수량주의 등 더많은 것이 곧 행복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 전체가 전두환이나 노태우를 지지해 온 겁니다. 특히 박정희를 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살아 보세' 했을 때 우리가 혹하고 반해서 현혹해 버린 것은 우리도 가져보야겠다는 소유욕이, 소유가 우리 존재를 규정해 왔습니다. 재산이 우리 행복의 표시였습니다.

남북문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접근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왔습니다. 강의 제목을 '한국과 나'라고 했으니까 나애기를 합니다. 저는 학생운동 때부터 사회운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내가 대체 이렇게 살다가 죽기 전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나라 밖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만 북한 사람들하고 비교적 많이 접촉을 한 셈입니다. 그래서 통일문제를 밖에서 보는 그런 입장이 아직도 강한 편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우성호 돌아온다고 하던데 대부분 신문을 읽어보면 북한이 우성호를 내주는 의도가 무엇일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는 어떻게 하나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성호가 와도 쌀 주는 것은 별개다. 둘째, 정말 한심한 것은 '우상호만 아니다, 더 보내라, 왜 우상호만이나.' 기본적인 발상이 인도주의의 제스처를 아주 전략적으로 받아서 우리가 한술 더뜨는 겁니다. 사실은 그 한술은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큰 것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 새끼들은 왜 우성호를 보내지? 뭐가 구린 것이 있다'라는 이 생각이 기사의 전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조무래기냐, 마음이 찌들리고 좁으냐는 여기서도 잘 드러납니다.

가령 인도주의에 대한 생각 자체가 아주 수량적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가치, 인도주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물량이 많으면 인도주의가 된다는 어느 수치가 1만 달러가 지나면 사람이 인도주의적으로 된다는, 이런 식의 수량적인 사고를 많이 합니다. 사실 그것은 아주 큰 병입니다. 그래서 5.18문제가 나올 때 내가 새누리신문에 사설을 썼습

니다만 '인도주의에 관한 범죄는 시효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뒤에 박원순변호사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왜 시효 문제를 지금 따지느냐. 시효는 인도주의에 관한 한 없다'는 것이 국제법상의 새로운 해석이고 관례가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는 상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도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가 안되어 있습니다. 가령 영양실조에 북한 사람들이 걸려 있다고 칩시다. 어른들 특히 나 같은 사람들은 10년 있으면 죽을 테니까 영양실조가 걸려도 상관없지요. 영양이 공급이 안되면 감성의 타격이 온답니다. 그 영양실조가 걸린 지금의 상태의 아이들하고, 여러분의 후손이 같이 살아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은 우리 후손들에 대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견하면서 예방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은 민족사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영양실조가 걸려 후천적으로 문제가 생긴 아이들하고 우리들의 자손들하고 같이 살아서 이웃하고 살고 장사도 같이 해야 하고 하는데 그것을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고 기가 막힌 결과가 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인도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계산보다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조건 갖다 줘야 하잖아요. 그런 것이 전부 '우성호 보내라, 동진호 보내라, 뭐 보내라' 자꾸 이렇게 해서 연장을 시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영양실조라고 하는 것은 한 번 걸리면 상당히 오랫동안 치료를 하는데, 이번 겨울에 영양실조에 걸리게 될 수많은 젊은 아이들이 입을 타격은 몇 십년 걸쳐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동북아시아의 관점에서 통일문제 풀어야

둘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은 우리는 동북아시아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통일문제는 남북 당사자들의 문제라고 하는데, 다 속지마세요. 당사자들의 문제가 아니고 아시아 평화의 문제입니다. 틀을 그렇게 잡아야 합니다. 지금 일본도 중국도 미국도 소련도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을 환영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일본의 세력이 육로를 통해서 중국에 진출하고 또 거꾸로 중국의 영향이 육로를 통해서 일본과 태평양에 진출하고, 미국도 곤란하고 중국과 소련도 곤란할 것입니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한반도에서 충돌하는 것은 역사적 경험인데요, 이 충돌을 완충시키는 것이 38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갈라 놓아야지 흥정이 되지 이것이 합쳐지게 되면 한반도의 정치가 잘못되어서 중국에 붙었다하면 일본이 불리해지고 일본에 붙었다하면 중국이 불리해져 서로 불신이 증폭하게 됩니다.

우리가 통일을 함으로써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유지된다는 생각을 만들어 내야 해요. 우리가 같이 살기 위해서는 이것이 있어야겠다. 이것은 서로의 국가이익에 부합되는 것

이다 하는 설명을 우리가 해야합니다. 우리가 또 몸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서로 신망을 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 제껴놓고 우리는 본디 하나의 민족이었으니까 우리는 통일을 해야할 권리가 있다라고 자꾸 우리 안의 단결만을 이야기하면 여타의 주변국가들이 '저 사람들 통일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치'하는 의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한국사람처럼 공격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거리의 운전에서부터 모든 일에 그렇게 공격적일 수가 없습니다. 해외수출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의고 나발이고 없어요. 규척, 규율이 어디 있어요? 먼저 가면 장땡이지, 이런 백성들이 통일을 하면 어떻게 되나 불안이 생기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북아시아라는 틀을 가지고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박해를 당했으니까 반대로 그런 콤플렉스가 생깁니다만 우리 민족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열등의식, 열등의식의 반대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되는 겁니다. 피놈, 왜놈, 곰(소련), 코쟁이(미국) 이것은 다 주변국가에 대한 멸시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당했기 때문에 오는 반사의 공격성입니다. 이 콤플렉스를 넘어서서 정정당당하게 일대일로 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 늠름하고 뚝뚝하고 당당한 자세를 어디에서 키우나? 안타까운 일이죠.

독일과 프랑스의 교훈 '유럽석탄철강공동체'

21일자 동아일보에 '독일과 불란서 관계에서 배워야 될 것'을 보면 구라파에서 독일과 불란서는 3번이나 전쟁을 치른 철천지 원수 아닙니까. 2차대전후 독일의 수상은 아데나워였습니다. 그는 반나치운동을 하다가 44년부터 감옥에 가서 죽을 고생을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치와 싸운 상징적인 인물이 독일의 수상이니까 불란서는 유리했지요. 그런데 그때 불란서의 외상이 로베르 슈망이었고, 드골이 수상이었는데 반독운동을 한 사람이니까 사사건건 독일사람들을 골탕 먹이려고 하고 있었죠. 슈망 외무장관은 후손들이 과거의 그런 관계가 되면 안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이자 재무장관을 지낸 장 모네와 이야기를 해서 한 안을 만들었습니다.

알자스 로렌지방은 불란서에서 가장 철강이 많이 나는 지역으로 이곳의 철강과 독일에서 가장 석탄이 많이 나는 루르지방 두 쪽을 연결시켜 철강과 석탄을 공동관리하자는 안이 그것입니다. 철강은 군사무기의 요체요, 석탄은 에너지의 원천 아닙니까? 철강과 석탄 생산량과 사용도를 서로 공동관리를 하면 전쟁의 가능성과 에너지의 전쟁화, 이 두 가지를 감시하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불란서의 두 장관이 이것을 만들어 아데나워 수상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데나워가 무릎을 닥치면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다, 당장 조인하겠다고 나서서 두 나라가 공동으로 발안해서 52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에 서명을 하고 여타의 나라들을 불러 모아서 57년에 로마에서 6개 국가가 여기에 조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구라파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양국이 이렇게 하면 구라파 전체에 평화를 심을 수 있다고 여기고 그 이름을 유럽석탄철강공동체라 불렀습니다. 얼마 전에 한림대 일본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한일공동심포지움에서 발제한 유명한 일본의 경제학자 미야시마교수(지금은 런던대학에서 은퇴)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불란서가 독일한테 당하고 피해의식이 있었는데 독일이 졌으니까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하질 않고 과거에 당한 나라가 콤플렉스를 이기고 같이 사는 길을 모색을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위대한 겁니다. 우리가 주변국가에게 계속 당했으니까 모두들 두들겨 주어야 한다는 이 콤플렉스를 언제 이기느냐, 그것을 이기기 전에는 역사적인 선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으면 통일은 아직도 먼 얘기입니다. 우리가 통일, 통일하지만 통일주장을 하면 할수록 흡수통일의 혼란에 빨려들어 갑니다. 통일하기 전에 '같이 사는 법'을 배우고, 가르치고, 실천해서 우리가 사는 자세가 북한사람들이 볼 때 '믿을 만하다, 남한에 믿을 만한 단체들이 있더라,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도 되겠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런 신뢰관계가 입증되기 전에는 통일은 안됩니다. 왜 북쪽 사람들한테만 그것을 요구합니까.

여기 재미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구라파공동체가 52년부터 시작되었다. 그것은 두 사람의 불란서 장관의 아이디어다." 기발하지요. 이것은 사람이 많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발의할 때 사람들을 모았겠지요. 그런 생각을 우리도 해야됩니다. 그런데 미야시마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동북아시아 평화를 생각할 때우리 상상력을 확장시키자. 한반도가 통일이 되고 중국이 4개 국가로 분할이 되고 일본도 2개로 나뉘어 한 정부가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크기를 줄여서 서로 위협을 느끼지 않게 만들 것이 하나 그 다음에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기차가 일본 동경에서부터 시작해 한반도를 거쳐 중국에서 월남으로 내려가서 타일랜드, 말레이시아 반도를 거쳐 싱가포르, 인도네시아까지 연결한다. 이렇게 아시아 공동체가 육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이런 꿈을 우리 후대에게 주어야 하지 않느냐. 나는 죽지만 후대사람들이 발랄하게 이런 생각을 하도록 기초를 마련해 주자"고 하시더라구요. 굉장히 감명 깊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통일을 이야기해야지, 우리 주변은 모두가 나쁜 놈들이니까 뭉쳐야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통일이 안됩니다.

틀을 넓게 잡고 '인간의 본연의 가치가 무엇인가. 인권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인권운동이라는 것이 나라 세우는데 손해가 되는 것이냐'는 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런 가장 보편적인 가치의 기초없이 어떻게 여러분은 인권을 설명할 수 있어요? 인권운동을 하

면 할수록 이러한 이론적인 실제 경험적 뒷받침을 자꾸 만들어가야 합니다. 만들어서 설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공생의 틀, 더불어 살 수 있는 틀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국내에서도 모든 계층 모든 사회의 분과들과 같이 살 수 있는 틀이 생깁니다. 국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적인 사회를 만들자는데도 설득을 해야합니다.

시론

국제화와 인권

오재식

정치언어의 상실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나서 우리가 느끼는 현기증 가운데 하나는 그 체제를 지탱했던 이념들이 공중에 매달린 가상구조물들이었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이다. 사실은 모든 이념이 그렇지만 우리는 과거 거의 반세기 동안이나 그 가상구조물에다가 많은 것을 걸었다. 또 그 구조물을 지탱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들을 집약해서 받침대로 삼았었다. 자유, 인권, 정의, 평등, 민주주의 등은 그런 받침대의 역할을 해온 것이다. 그 받침대들은 가상구조물의 영구성을 증명하고 설명하는 정치언어였다. 군사작전이나 경제행위가 다 그런 언어로 포장되었었다. 냉전체제는 다름 아닌 보편적 가치의 우월성을 내세우는 경쟁이기도 했다. 그런 경쟁상태에서는 경쟁상대방의 약점이 한쪽의 강점으로 생각되었으므로 한 나라의 실책과 독재와 부패 같은 것은 상대방에 이점을 주지 않는다는 범위에서 관용했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냉전체제의 종식을 선언한 이래 정치언어로서의 보편적 가치들이 퇴색해버린 것이다.

성급한 해결의 후예들은 이것이 한 체제의 다른 체제에 대한 승리라고도 말하고, 그러므로 이른바 자본주의 체제를 포장해온 보편적 가치들의 완성인 것

동아일보 1995년 12월 22일 금요일

獨-佛 관계에서 배워야할 것들

20세기 중반까지 독일과 프랑스는 세 차례의 큰 전쟁을 치른 숙적이었다. 1870년 전쟁에선 프랑스가 전락지역인 알자스로렌지방을 독일에 빼앗겼고 제1차 세계대전에서 프랑스는 실지발판을 위해 대 독일 보복전을 펼쳤다. 독일은 2차대전 기간동안 프랑스를 점령, 비시괴뢰정부 세우고 통치함으로써 1차대전배상금 3백억달러를 끝까지 고집하던 프랑스에 복수했다.

그러나 오늘날 양국관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양국은 유럽연합(EU)의 테두리내에서 인적 물적 자본의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하고 있다. 학위와 각종 자격증이 상호인정돼 국가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상호취업도 가능하다. 양국정부는 언 2회 이상의 정상회담을 통해 각종 문제들을 합의 해결하고 있다. 92년 이후 독일장동군인(유리 코어)을 참살, 양국이 윤번제로 사령관을 맡아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외교분야에서도 이해관계가 크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서는 합동대사관 개념을 도입, 양국외교관들이 몇개일씩 교대 근무를 하고있다.

양국 국민들 사이엔 프랑스국민 독일국민이 기 전에 「유럽시민」이라는 연대의식이 존재한다. 네오나치즘 극우인종주의자들의 목소리는 이런 분위기속에서 시대착오적인 망령으로 취급되는 실정이다. 특히 지식인들은 나치독일



이 저지른 반인류 전쟁범죄에 대해 5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반성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이렇게 과거의 적에서 오늘의 동지로 새출발할 수 있었을까. 2차대전 종전후 서독의 지도자는 아데나워였다. 그는 44년 히틀러 암살사건에 연루돼 투옥됐던 반 나치주의자로 새로 태어난 자유민주 독일을 상징하고 있었다. 당시 프랑스 외무장관 로베르 슈양은 독일에 빼앗겼다 수복된 알자스로렌 지방 출신. 이웃과 전쟁없는 평화와 번영을 구축하는 것이 그의 가장 큰 관심사였다.

유럽의 평화는 건원기간인 프랑스와 독일간의 관계만 원만하면 가능한 것처럼 보였다. 슈양장관은 절친한 동료이자 재무장관을 지낸 장 모네와 전쟁위기에 대해 협의했다. 그는 프랑스의 알자스 로렌 지방은 유럽 최대의 철강산지이며 독일의 루르지방은 석탄산지이니

프랑스와 독일이 철강과 석탄생산을 공동규제하면 어느 일방이 무기를 만들고 싶어도 만들지 못하게 돼 결국 전쟁이 억제될 것이라고 제의했다.

유럽석탄철강공동체안은 이렇게 시작됐고 아데나워 총리가 이를 열광적으로 받아들여 마침내 52년 공동체가 창설됐다. 석탄철강공동체의 성공은 57년 로마조약에 의한 6개국 유럽공동시장 탄생으로 발전했고 이는 오늘날 15개국이 가입한 유럽연합으로 성장. 「하나의 유럽」이라는 유럽인들의 오랜 꿈을 실현시켰다. 이러한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양국 지도자들의 각별한 노력이 있었다. 뜻대높인 민족주의자 드골대통령도 미국과는 여러번 충돌하였으면서도 독일과는 감성노출을 극력 회피했다. 한편 아데나워는 서독의 경제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미국보다도 프랑스를 서독의 제1파트너로 대우했다. 가해자로서 속죄를 그렇게 한 것이다.

만일 2차대전 종전후 李承晚대통령과 일본의 요시다(西田)총리가 슈양이나 아데나워의 역할을 했더라면 한일관계는 오늘날과는 다른 차원으로 발전했을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한일 양국국민은 세계의 시민으로 거듭 태어나 21세기 아시아 태평양시대의 두 주역으로서 생산적인 협력방안을 추구해 나가기로 기대해 본다. (외교안보연구원 대사)

국제화와 인권 11

처럼 선전한다. 어느새 가치들의 보편성을 놓고 경쟁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냉전체제는 한 체제의 붕괴로 막을 내렸지만 양 체제를 지탱해온 것이 결국은 가상구조물들이었다는 자각은 남은 체제의 신빙성도 의심하게 하였다. 자본주의 체제에 그것이 표방해온 가치들을 지켜갈 의지와 힘이 남아있느냐.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는 자본주의 체제의 짐을 더 무겁게 한 것이다. 냉전체제하에서는 보편적 가치들이 상대적인 우위를 지키면 되었는데 경쟁이 끝난 지금에는 그 보편성이 전인류를 시야에 넣을 수 있느냐 하는 도전을 받고 있다. 이것은 전혀 예기치 않았던 도전이고, 또 경쟁상대가 없이 혼자서 뛰는 경주가 되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경쟁에서 이긴 자의 피곤을 보기 시작한다. 혼자서 뛰는 경주자의 피곤, 가치의 상대적 우위가 아니라 이제는 독자적인 진리를 증명해야 하는 데서 오는 피곤이 그것이다. 미국은 이미 도덕성의 경찰이 되기를 포기했고 얼마 전까지의 우방들은 경제적 경쟁국들이 되었다. 소말리아와 보스니아에서 보듯이 군사적 작전과 전략에서조차도 우방들간에 보조가 맞지 않는 것이 표면화되었다. 또 군사행동을 정당화하던 정치언어가 쇠퇴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OECD 회원국들간의 정치적 동맹을 전제로 했던 경제협력은 그 틀이 바뀌어서 이제는 회원국들 상호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또 그것 때문에 단위국가의 실업률 증가와 인플레이와 같은 경제적 타격을 더 입는다고 한다. 냉전 때 '자유진영'을 이끌었던 미국, 일본, 서구라파 제국들은 자기들 상호간의 경쟁체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재빨리 변신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여타의 세계는 잊혀지고 있다.

정치언어의 상실이다. 냉전에 대처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가상(가공)의 구조물이 무너지고 있다. 그것을 지탱했던 받침대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들도 새로운 구조물의 비진과 설계에 따라서 길어졌다 짧아졌다 할 것이다. 또 어떤 것은 아무데도 쓸모가 없는 천덕꾸러기가 될 수도 있다. 냉전체제 붕괴 이후 뚜렷하게 나타난 증후군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 세 가지를 든다면 나는 ① 근본주의(원리주의)의 대두 ② 시장논리의 확대 ③ 민족·종족주의의 확산을 들 수 있겠다. 급속히 정치세력화하고 있는 회교(回教)의 근본주의는 근본주의 대두의 한 예로서 기독교적 세계주의의 언어로 무장해온 북대서양권에 심각한 도전으로 대두하고 있다. 냉전의 가공구조물로 덮여서 보이지 않던 민족주의·종족주의도 활발하게 머리를 들고 있다. 시장 논리는 어떤가. 시장의 기능과 행태가

12 시론

정치언어를 벗어난 지 오래되었지만 이제는 노골적으로 정치, 군사적 제약을 무시하고 독자적인 논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시장 논리와 언어가 국민국가의 그것들을 스스럼없이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시장 논리와 행태가 국가이익을 우선시킨다고 해서 지탄을 받거나 부끄러운 줄도 모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세계주의적인 언어가 후퇴했다는 것이다. "인류를 공포와 무지와 빈곤으로부터 해방시킨다"는 적어도 과거 50년 동안의 정치구호가 이제는 퇴색되었다. '세계'는 이제 국가주의와 맞춰서 줄을 서야 하고 국가이익의 연장선상에서만 보이게 되었다. 세계는 다시 '국가연합'이란 좁은 틀 안에서 숨을 죽이고 있어야 한다. 돌이켜보면 근대화를 밀고온 계몽주의, 철학과 운동의 에너지가 피곤해지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 이성의 합리적인 사고능력을 바닥에 깔고 인간과 사회의 개발과 발전을 예측하고 계획했던 근대화운동이 국가이익이란 벽에 부딪혔다 하겠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근대화는 국민국가란 기본 부스타에 업혀서 전개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한 번도 '세계'는 국가를 떠나서 존재하지 않았었다. 그러면서도 국가는 '세계'를 통해서 국가행위를 정당화해왔다. 이 역동관계를 가능하게 한 것이 앞서 말한 가공의 구조물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고 난 후의 국가주의는 자체의 행위를 변호할 언어를 새로 찾아야 하게 되었다.

정치명분으로서의 국제화

요즘 항간에서는 '국제화'를 모르면 정치를 말라고들 한다. 어디 정치뿐만아. 경제, 군사, 사회생활, 학문연구, 통신, 교통할 것 없이 누구나가 다 국제화란 맥락에서 이야기해야 한다. 국제화는 이제 적어도 정치·경제행위의 명분이 되었다. 제3공화국에서 '조국근대화'가 정치명분이었듯이 문민정부는 '국제화', '국가경쟁력' 같은 것을 내세워서 정부의 목표, 경제의 지표로 삼고 있다. 이것은 이제 이 정부의 정치적 명분이 된 것 같고, 따라서 이것을 표방한 모든 행위는 우선순위의 인정과 지원을 받게 되어 있는 것 같다.

국제화란 국가들간의 관계를 지향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사회는 그 관계를

유지하는 장소, 기구, 제도, 관계 등을 말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국제화는 국제사회를 지향해가는 방향성이다. 이 말은 또 우리 사회를 개방적인 사회로 만들고 국민을 국제관계에서 손색이 없게 교육시키며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위해 우리가 국제사회의 떳떳한 회원이 되게 한다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명예로운 회원이 되기 위해서도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경제력은 우리가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데 필요한 것이지만 충분한 조건은 아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이른바 세계 열강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힘의 횡포를 겪어왔다. 약소민족의 아픔과 수난의 역정을 어느 민족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터이다. 이제 조금 형편이 나아졌다고 해서 열강들의 패권정치의 일익을 담당하려고 하는가. '국가경쟁력'을 이 나라의 지상목표인 것처럼 떠들어대는 행정책임자들의 자세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허전하기만 하다. 국가목표를 국제경쟁력에 두는 것은 적어도 두 가지 점에서 국민을 오도한다. 그 하나는 우리 삶의 가치를 경제 중심으로 매긴다는 것이요, 둘째는 그것이 부국강병을 국가이념으로 하던 군국주의시대의 유물이라는 점이다. 냉전종식의 후유증이 가시지 않고 있고 세계 각지에서 새로운 질서의 도래를 저항하는 수구적 세력들이 안간힘을 쓰지만 그것들은 분명히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일임에 틀림이 없다. 이제 국제사회의 신참 회원으로 들어가는 마당에 역사의 찌꺼기들을 추켜들어 우리의 깃발로 삼아야 하는가.

우리나라의 자본주의적 경제행위는 윤리도 도덕도 없는 돈벌이에 불과하다. 초월적 가치를 바탕으로 했던 이탈리아의 초기 상업자본주의에서 보는 긴장이나 막스 베버가 본 산업자본주의자들의 자기수련 같은 것은 제껴버리고 곧바로 돈놓고 돈먹기식의 경제행위로 돌진하고 있다. 이것은 한 이념에 입각한 경제행위라고는 할 수 없는, 최소한의 양심이나 거래에 필요한 신의조차도 언제든 지 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법에 의한 지도와 제제가 있다 하겠지만 법은 인간의 양심과 행태의 전부를 담기에는 너무나 작은 그릇이다. 국제경쟁력이란 마치 정글과 같은 국내의 시장행위를 국제적으로 펼쳐가자는 것처럼 들린다. 경제를 물질의 교환을 통한 이윤획득으로만 생각하면 단견이다. 한 민족의 사회생활의 절도와 문화적 품위와 보편적 가치를 위한 자세들은 다 경제적 성과와 연계되는 것이다. 이런 경제외적 요소와 영역들을 다 국제경쟁력이란 구호 아래로 수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미국을 비롯한 구라파 제국이 '무한경쟁의 시대'라는 구호를 자주 쓰는 데는 시대의 기운을 오도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방어하려는 의도가 있다. 그것은 냉전시대를 이끌어온 세계주의, '미개한 사회'를 문명사회로 이끌려는 구세주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입증하려는 인도주의적 가치들이 이제는 자국의 이익을 지키는 데 부담으로 남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세계주의적 이상이 국제주의로, 국제주의의 광장이 국가이익들의 무한경쟁의 씨름판으로 축소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된다. 국제정치의 언어는 당돌하고 노골적으로 되었고, 시장 논리가 그 언어의 핵을 이루고 있다. 나는 여기서 세계주의와 국제화를 구별해서 쓰고 싶다. 세계주의는 여러번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인류 전체가 지행해야 할 새로운 질서, 또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바탕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때까지 세계주의의 비전은 국민국가에 의해서 제창·주도되었지만 그것들의 관장과 통제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거기에 비해서 국제화는 말의 뜻대로 국가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증대·유지해간다는 말이다. 유엔을 비롯한 많은 국제기구들이 국민국가를 기초로 해서 형성되어 있고, 따라서 그것들은 국가의 이해관계와 상반되게 운영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틀 안에서 국제기구와 국제협약 등의 권위와 정당성은 한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가 국민의 의사와 열망을 잘 대변하고 있는나에 달려 있게 마련이다. 불의하고 부패한 정부는 강압적인 수단으로 그 대표권을 강변했고, 그런 국가들이 모여서 만들고 운영하는 기구들은 당연히 강대국들의 조정과 영향과 나아가서는 조작 등이 행하는 판이어왔다.

그동안은 냉전이라는 협박체제가 이 판의 비리와 힘의 횡포를 엄폐해왔고, 또 그런 파행들은 세계주의의 간판 뒤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지만 그 가공의 구조물이 무너진 지금, 우리는 국민국가의 국가이기주의가 세계의 열망을 걸머질 수 있는가를 엄격히 물어야 한다. 이것은 근대 민족국가가 대두해서부터 근 300여 년 동안 세계를 주름잡아온 서구라파의 국가들이나 과거 반세기 동안의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민족국가를 세워가려는 후참 국가들이 다같이 대면해야 할 도전적인 질문이다. 역사의 전개과정은 후참자에게 시차의 결손을 보상받을 여유를 주지 않는다. 또 우리가 내세우는 국가가 앞서가는 국가들의 힘의 횡포를 답습해서도 안될 것이다.

국제화란 정치적 구호는 얼른 듣기에 매력적인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국민

국제화와 인권 15

의 호응을 받아 끌고갈 수 있을 만한 자체의 힘이 없다. 그것은 감각적이지 본질적이지는 못하다. 그런데 그런 비본질적인 것을 위해 국가경쟁력을 키우고 동원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다. 국가경쟁력을 키워 무한경쟁의 시대에 뛰어들겠다는 패기는 그럴 듯하지만 사실 거기에는 선진 공업국가들의 '국제화 게임'에 휘말릴 위험성이 더 많다. 국민경제 총생산량의 70% 이상을 대외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절실한 문제인 줄 안다. 그러나 대외무역의존도가 10% 안팎인 미국 같은 나라로서는 그렇게 절박한 문제가 아닐 것이다. 미국의 경우, 국제경쟁력이 경제의 사활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종의 강박관념이라고 반론하는 학자도 나오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국가는 국제사회의 바람 끝이 다르게 돌아갈 것에 대비하는 여유를 가져야 마땅하고, 경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국가의 명운을 거는 것 같은 조바심은 자제해야 한다.

세계화와 보편적 가치

우리의 선배들은 우리 민족이 가장 약하고 암울한 처지에 놓였을 때 인류의 가장 원초적인 보편적 가치를 치켜들고 대갈했었다. 3·1독립선언문이 그것이다. 지금 세기말에 서서, 금세기 초에 나라를 잃고 발을 구르던 선배들의 넋을 기리며 다시 읽는 그 선언은 새로운 감명을 준다. 그들은 힘에 눌리면서 힘의 시대가 가는 것을 직시할 용기를 가졌었다. 칠혹 같은 패권정치 아래서 새 천지의 개벽을 꿈꾸고 있었다. 포악한 침략자를 타일러서 평화를 위해 일할 것을 충고하고 있었다. 우리가 가장 약했을 때 잡을 수 있었던 꿈과 용기와 기상은 이제 사라져버리고 한때 우리를 억눌렀던 패권을 우리도 갖기 위해서 매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두렵다. 그 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를 볼 수 있었다. 그런 세계가 올 것을 믿었고 또 그런 세계를 위해서 다짐도 했었다. 그로부터 75년, 그때 분명하게 보이던 세계는 없어지고 국가들의 깃발이 펄럭일 뿐이다.

그러나 세계는 없어진 것이 아니다. 전혀 엉뚱한 데서 세계는 시작되고 있고 펼쳐져 나아간다. 인간의 존엄과 자유가 이제는 국가란 틀 속에 담아둘 수 없는 가치로 새롭게 인정받기 시작했다. 국민국가의 국경을 넘은 피난민과 이주

16 시론

노동자의 숫자가 수천만 명에 이른다. 국내법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규모가 되었다. 이것은 관념적으로 합의했던 인간의 권리가 현실로서 육박해온 한 예이다. 통신, 교통기술의 발달은 정보와 지식을 산업화시키기에 이르렀고 그 규모는 혁명적이어서 우리의 생활양상 자체를 바꾸고 있다. 이것은 세계정치에서 행동주체가 국가이던 것을 넘어서 그 주체의 다양화(多様化)를 가져오고 있다. 정보가 국가기관의 중앙통제를 거치지 않고 각 사람에게 직접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은 한 개인의 가치판단과 주체성을 확립하는 데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이것은 또 각 인간공동체나 지방의 세계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행동주체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주체들간의 관계가 다변화되고 있다. 지방은 지방대로 한 덩어리가 아니다. 그 안에 각각의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있고 바다. 민중들의 열망이 있으며 전문기관과 조직들의 공헌도 있다. 그러므로 행동주체의 다층화도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복잡하고 다원적인 주체와 그들 관계의 전개는 세계정치의 힘의 중심부의 경륜과 계획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한다. 이때까지의 '세계'는 국가와 국가간의 합의의 연장선상에 있었으나 이제부터의 '세계'는 전혀 엉뚱한 데서 형성되어서 국가들의 기본 틀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은 물론 아니다. 우리는 앞으로 오랫동안 국가 안에서 살아야 할 것이다. 국가는 개인의 안전과 안녕을 제공하고 지켜가는 중요한 기관이다. 그러나 국가의 목표 달성이 곧 세계화를 이루는 길이라는 단순등식은 경계해야 한다.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 세계 평화를 가져오는 길이라는 생각도 검토해보아야 한다. 국가의 목표 자체가 잘못 세워질 수 있고 또 국가의 운영이 세계 평화에 역행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특별히 우리나라 민족처럼 오랫동안 단일민족이란 신화와 역사 속에서 살아온 경험으로는 폭이 넓어지는 세계에 뛰어들기도 또는 그것을 수용하기도 힘들게 마련이다. 우리는 안으로는 확일적이고 밖으로는 폐쇄적이다. 다시 말하면 안으로는 지도자의 뒤에서 비굴하고 밖으로는 무작정 공격적일 수 있다는 말이다. 세계화의 길은 자기주장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주장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세계화는 남을 짓히고 나만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상생(相生)의 길을 찾는 일이다. 그 길은 아집을 버리고 관용을 배우는 길이다.

오늘날의 환경문제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우선 그 문제는 국가

단위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널리 퍼졌다. 또 그것은 새로 대두된 또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경제행위, 삶의 가치에 대한 태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생물계, 자연계 모든 것과의 관계 등을 그 근본에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문제는 현대문명을 가로막는 '사이렌'의 노래소리다. 그러므로 환경문제는 새로운 세계의 지평을 여는 관문이다. 이 거창한 인류의 과제를 국가나 국가집단에 맡겨놓기에는 허전한 데가 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의 국가들의 행보가 세계 사람들의 신망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2년 '리우'회의에서도 잘 나타났지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 각 정부는 국가이익을 우선시키느냐 또는 세계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택하느냐의 딜레마에 직면했다. 이 난제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문제이다. 결국은 양자택일이 아니라 두 개의 우선순위 사이의 적정선을 어디에 긋느냐의 문제가 될 것이다. 단순논리로 말하면 공업선진국들이 경제성장을 희생하고서라도 적극적인 출자와 대책을 선도해야 하는데 그들을 설득할 만한 언어가 없고 도덕적인 압력도 약하다. 그래서 '세계'는 언제나 뒷전으로 밀리게 마련이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명예로운 세계시민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보다 강한 자들과의 경쟁을 통해서 우리의 강인함과 창의력을 내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경쟁에 몰두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는 세계를 잃어버릴 수 있다. 세계에 등을 돌린 국민의 역량이나 국민경제의 힘은 무의미하다.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의 하나하나가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경쟁력의 궁극적 평가는 그 제품에 따르는 신화에 있다. 제품과 함께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의 꿈과 철학과 신념과 상징들이 전달되어야 한다. 꿈과 철학이라 하니 거창한 것 같지만 끈기와 고집이 없이 어떻게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으며 공감을 살 만한 신념이 없이 어떻게 판촉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겪어온 쓰라린 과거사는 우리의 자산이고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약했을 때 가장 보편적 가치에 대한 신념이 투철했듯이, 우리는 아직도 과거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용기를 보여야 한다. 가장 약한 자의 편에 설 수 있는 용기가 참 힘이다. 그런 힘을 고취하고 키워가는 것은 우리 민족의 긍지와 품격을 높이고 나아가 우리 상품을 떳떳한 세계시민의 제품으로 만드는 것이다. 약한 자의 힘을 모르는 자는 강하지 못하다.

인권과 정치

카터 대통령 이래 인권은 미국 외교정책에 중요한 요소로 등장했다. 시민권 제한, 인간 자존권의 무시, 시민적 양심의 억압, 협박·고문에 의한 고백 강요 등은 규탄을 받았을 뿐 아니라 마침내는 미국 해외원조의 중요한 조건으로 연계되어왔다. 그러나 이 원칙이 관행이 되어 반복되면서 각국 인권상황의 점수 매김이 시작되었고 이것은 또 미국과의 경제교섭의 흥정거리가 되어왔다. 어느새 인권문제는 그 독자적인 가치에 따르는 판단보다는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나온 점수를 따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인권과 경제는 주객이 바뀌어서 경제적 타산에 맞추는 정치적 도구로 인권이 전락해버린 것 같다. 우리나라는 이 그늘에 숨어서 인권문제를 슬그머니 뒷전에 미루어놓은 것 같다. 아직도 광주사건의 책임자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재소양심수들이 줄지 않고 있으며, 사상범·장기수의 문제, 사면·복권에 미온적인 것 등등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한 채 국제화를 떠돌고 있다. 세계화는 고사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려고 해도 국가의 품위와 체통은 상품경쟁력에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새 정부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가고 있다.

인권문제는 또 개인의 시민적 여러 권리에서 나아가 개인과 집단의 생존권, 개발권에도 확장되고 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의 생존권이 어느 가치보다도 우선한다는 인식은 보편적 가치의 기초이지만, 그것을 원칙으로 세우려는 정치적 의지가 창출되지 못하고 있고, 또 그 원칙을 수행해갈 처방도 아직은 없다. 유니세프(UNICEF)는 금년도에 세계 어린이들을 억울한 죽음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해서 세계적 마살 계획(Global Marshall Plan)을 세우고 이에 각 나라가 호응해주기를 호소하고 있다. 마살 계획은 두말할 것도 없이 제2차 세계대전 후에 황폐한 구라파를 재건하기 위한 미국의 무상원조계획이었다. 우리 후손들을 인간이 만든 재앙으로부터 구출하자는 운동은 얼마나 숭고한 것인가. 그러나 얼른 듣기에는 극히 비경제적인 운동이어서 투자 가치가 없다고 판단할 것이지만 이와 같은 가장 보편적 가치에 대한 투자는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보탬이 될 것이다. 물론 나는 기업이나 국가에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간 생명의 존귀

함과 그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모르는 경제행위는 나라 안에서나 밖에서나 궁지에 몰릴 것은 뻔한 일이다.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국가 차원의 우선순위로 한 정책입안자들의 계산은 알 길이 없으나 우리 기업이나 상사의 해외시장에서의 거동은 반성할 필요가 있다. 현지의 문화나 풍습, 사회조직상의 예우 같은 것을 미처 터득하지 못한, 저돌적인 판촉경쟁과 기업의 운영방식은 이미 동남아 여러 나라에서 규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아프리카와 남미 연안에 나가 있는 원앙어업이나 시베리아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벌목작업 등은 그린피스의 지적사항이 되고 있다.

아직은 희미하지만 새로운 세계는 오고 있고 그 세계의 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의무감이 없는 '국가경쟁력' 캠페인은 머지않아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 것이다.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한국민족의 제품을 세계에 내놓을 때이다.

(기독교 사회교육원 원장)